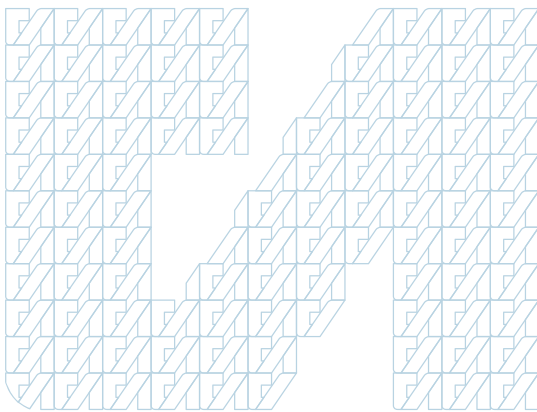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안용준 · 지남석



연구책임

• 안용준 / 세종연구실 연구위원

공동연구

• 지남석 / 세종연구실 연구위원

정책연구 2018-02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발행인 박 재 목

발행일 2018년 2월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선화동 287-2)

전화 : 042-530-3500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si.re.kr>

인 쇄 청택기획 TEL 042-487-2589 FAX 042-487-1887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요 약

I. 서론

연구배경 및 목적

-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의 전면사용이 의무화되어, 민원서류나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반드시 도로명주소가 기재되어야만 처리가 가능해짐.
- 시민들은 도로명주소를 공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법정주소로 인지하고는 있지만, 실생활에서 이용할 때 여전히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음.
- 본 연구는 세종시민들의 도로명주소 인지도, 활용도 및 만족도, 불편사항 실태 등을 조사하여 도로명주소의 문제점과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개선 및 정책방안을 도출하기 위함.
- 세종시민들을 위한 맞춤형 개선방안 도출이 필요함.

연구방법 및 내용

- 도로명주소관련 연구 및 정책 사례조사(타지자체 및 해외), 관련계획 및 법령조사
- 성별, 연령별 및 계층별 균형이 되도록 설문대상 표본을 선정하여, 설문지 문항 설계 (세종시민대상 설문조사)
- 설문조사결과 분석 및 시사점 도출 (기초통계분석, 세종시 2016년 결과 및 타지자체 설문조사결과와 비교분석)
- 세종시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및 정책제언 도출

II. 도로명주소 추진현황

도로명주소 개념 및 목적

- 주소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나 기관, 회사 등이 위치하고 있는 곳을 이룸으로 표현한 것이며, 각종 법률관계의 기준이자 일상생활의 중심이 되

는 곳임.

- 우리나라는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주소의 표현 방식을 지번주소와 구분하기 위해 도로명주소라는 용어를 법률용어로 사용하게 됨.
- 도로명주소는 건물번호를 주소로 사용했던 역사적 배경,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보편성, 위치 찾기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도로마다 이름을 부여하고, 그 도로를 따라 위치한 건물에 번호를 체계적으로 부여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표현하는 주소임.
- 도로명주소의 도입목적은 도로명주소를 통해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도로명주소 사용방법

- 도로명주소는 종전의 지번주소와 시·군·구(행정구 포함), 읍·면까지는 같지만 동·리 + 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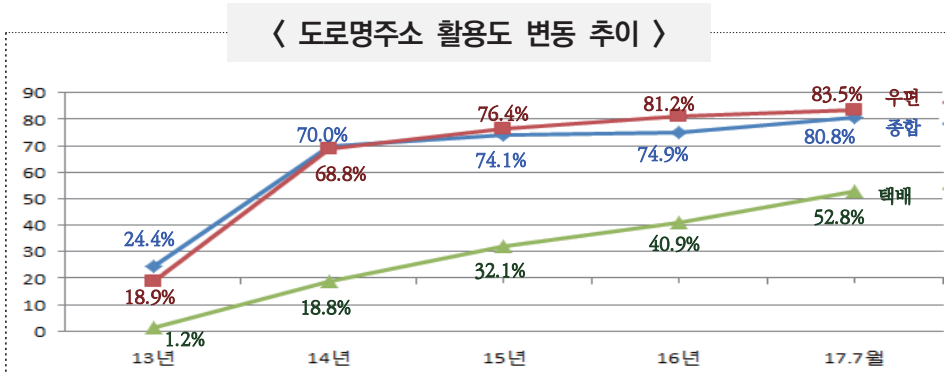
구분	지번주소	새주소
단독주택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40-5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3길 6
업무용빌딩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가 100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66. 00호
공동주택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83-10 00아파트 00동 0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58, 00동 00호

- 도로명 부여는 큰길의 경우 지명, 역사, 기존도로명 등을 활용한 명사와 대로, 로와 같은 도로의 위계를 사용하여 분기되는 작은 길은 큰길의 도로명 + 체계적인 숫자를 사용함.
- 건물번호는 주된 출입구에 인접한 도로의 기초번호 사용을 원칙으로 함.
- 도로명판은 「대로·로·길」로 구분되는 도로의 폭에 따라 크기가 다르며, 도로명, 기초번호, 방향표시(화살표), 로마자를 표기함.
- 건물번호판은 「대로·로·길」로 구분되는 도로의 폭에 따라 크기가 다르며, 도로명과 건물번호가 표기되어 있음.

III. 국내외 사례조사

□ 국내 도로명주소정책

-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 생활화, 전 국토에 종합적인 주소체계 구현, 주소기반 4차산업 창출을 담은 '제3차 주소정책 추진 종합계획 (2018~2022)'을 2017년 12월 27일 발표함.



- 경상남도, 경기도 시흥시, 강원도 평창군 등 각 지자체들은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음.

□ 국내외 사례조사 시사점

- 예전부터 도로명주소를 시행하고 있는 프랑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호주, 뉴질랜드의 도로명주소관련 정책 및 시설들을 파악하였음.
- 우리나라의 국가지점번호 체계와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는 영국, 프랑스의 격자체계 설정 및 운영 방법은 각 기관에서 공공분야 활용에 적합하도록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에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음.
- 스페인, 이탈리아 주소체계 운영방법의 경우 각 기관에서 전문부서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 가능하도록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도로명 부여 및 변경 시 위원회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참고하여 정부가 결정·관리 주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호주 및 뉴질랜드는 구간이 짧은 도로라도 개별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

로명을 부여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도 위치확인 및 주소표기가 어려운 종속구간에 새로이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IV. 세종시 도로명주소 이용현황

세종시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 2017년 12월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http://www.juso.go.kr>)에서 제공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명주소는 총 998개이며, 998개의 주소는 ‘대로’ 3개(0.3%), ‘로’ 199개(19.94%), ‘길’ 796개(79.76%)로 분류하고 있음.
- 도로명주소 데이터베이스는 엑셀 포맷 형태의 데이터 뿐만 아니라 안내도 형태로도 제공하고 있으며, 안내도 역시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함.

세종시 도로명주소관련 정책사례

- 세종시는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 및 문제점 개선을 위해, 도로명주소 서포터즈, 안내지도 발간, 퀴즈행사, 홍보전시회,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교육, 어린이 및 초등학생 도로명 문화탐방, 자율형 건물번호판 공모전 등 다양한 홍보 및 교육정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으며 도로명주소시스템 DB품질개선 등 기술서비스 부분에서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음.

세종시 도로명주소관련 설문조사분석

- 세종시민들의 도로명주소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세종시 거주 만10대이상 550명 시민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인지도, 숙지도, 활용도, 만족도, 불편 및 개선사항 등 5개 분야 14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음.

○ 주요 설문분석결과

구분	내용	조사결과
인지도	들어본 적 있음 : 98.2%	<p>단위(%)</p> <p>■ 있다 ■ 없다</p>
숙지도	알고 있음 : 98.0% (정확히 알고 있음 : 83.9% 어렴풋이 알고 있음 : 14.1%)	<p>단위(%)</p> <p>정확히 알고 있다 83.9 어렴풋이 생각나는 정도이다 14.1 모른다 2.0</p>
활용도	사용해본 적 있음 : 97.2%	<p>단위(%)</p> <p>■ 있다 ■ 없다</p>
만족도	만족함 : 51.5% (매우 만족함 : 13.0% 만족하는 편임 : 38.5%)	<p>단위(%)</p> <p>매우 만족한다 13.0 만족하는 편이다 38.5 보통이다 37.2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8.4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3.0</p>

- *(참조) 2016년 설문분석과 비교 (2016년은 만족도 항목 부재)
- 도로명주소 인지도는 98.2%로 2016년 96.8%대비 1.4% 상승
 - 도로명주소 숙지도는 98.0%로 2016년 95.6%대비 2.4% 상승
 - 도로명주소 활용도는 97.2%로 2016년 93.6%대비 3.6% 상승

○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관련은 도로명주소를 기억하기가 어렵다, 공간적 위치 파악이 어렵다, 도로명주소 체계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공통적으로 다수 있었음.

V. 도로명주소 활성화방안

도로명주소의 쟁점사항

○ 대부분의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인지하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사용은 여전히 저조한 편임.

- 도로명주소 사용에 있어서 기억하기 어려움.
- 도로명주소 체계 및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대략적인 공간적 위치 인식이 어려움.
- 도로구간 설정(종속구간) 및 도로명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도로명길이 및 표 기법, 상세주소 등)가 있음.
- 중앙정부 및 지자체들은 많은 비용을 들여서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 홍보 및 교육하였으며, 도로명주소관련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적용되었으나, 상당부분 정책들이 도로명주소에 대한 전환, 인지도 및 숙지도 향상에 집중된 경향이 있음.

세종시 도로명주소 활성화방안

- 세종시 특성상,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전환한 읍면지역과 도로명주소만 부여되었던 신도심지역은 각각 맞춤형 시책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숙지도 및 만족도가 낮은 계층들에 초점을 두고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함.
- 공간적 위치가 절대적으로 인지될 수 있는 대표적인 도로명들을 부각시켜, 도로명기반으로 공간적 위치를 파악하도록 하여야 있음.
- 도로명주소의 인지도는 매우 높으므로, 지번주소가 혼용 가능할 경우 지번주소 사용을 억제하고 도로명주소를 사용토록 해야 함.
- 지번주소에서의 동·리·구·통·반의 생활공동체 커뮤니티처럼, 도로명을 통한 공동체 커뮤니티 구축으로 소속감 형성에 대한 신중한 고민이 필요함.
- 도로명주소의 위치찾기, 응급상황대응, 제4차산업혁명 연계 등, 도로명주소의 기능적 장점 및 잠재성을 부각시켜야 함.

VI. 결론

연구의 기여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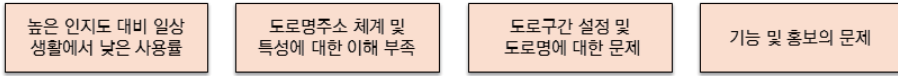
- 본 연구는 2014년 도로명주소의 전면사용이 의무화된 이후, 세종시의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 개선 및 정책방안을 도출하였음.

- 도로명주소관련 선행연구 및 국내외 도로명주소정책 사례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세종시 도로명주소관련 정책을 분석하고, 세종시민들의 도로명주소 인지도, 활용도 및 만족도, 불편사항 등을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입장에서 도로명주소의 사용실태 분석과 개선사항을 도출함.
- 타 지자체의 설문조사결과에 비교하여, 세종시민들의 사용실태를 비교하고 특성을 파악함.
- 도로명주소의 일반적인 쟁점사항에 대한 토의와 세종시 도로명주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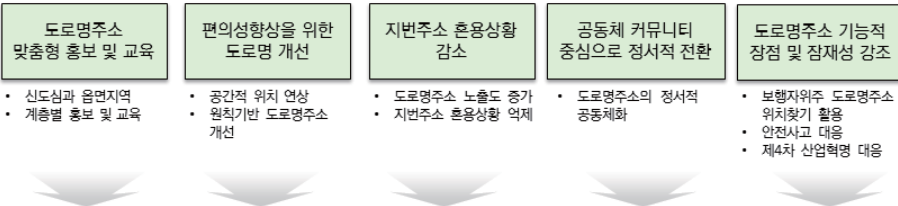
□ 정책 제언

- 국내외 정책 및 사례조사 시사점, 세종시 도로명주소 정책사례, 세종시민 설문조사분석결과 및 타지자체 설문조사분석결과 비교를 토대로 도로명주소의 쟁점사항 및 세종시 도로명주소 활성화방안을 파악하고, 이에 연계한 정책들을 제언하고자 함.
- 지역별·계층별 맞춤형 홍보 및 교육 정책
 - 세종시 특성인 신도심지역은 계획도시이며 이주민위주의 신규전입세대가 많은 지역이며, 읍면지역은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의 전환과정을 가진 지역이므로, 도로명주소에 대한 숙지도 및 만족도가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지역별 맞춤형 홍보 및 교육 정책을 적용해야 함.
 - 세종시 도로명주소 시책 중에 효과적이라고 응답했던 전입세대 도로명주소 문자안내 발송,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발간 등의 서비스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해야 함.
- 도로명주소 개선 가이드라인 구축
 - 세종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원칙적인 가이드라인을 구축하여, 개선시 지역 주민들의 혼란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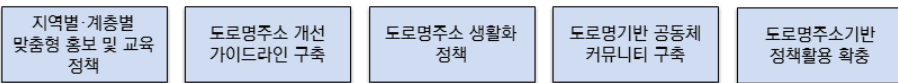
도로명주소 쟁점사항



세종시 도로명주소 활성화 방안



도로명주소 정책 제언



- 단순히 숙지성과 활용성을 위해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명주소의 근본적인 취지와 도입의도에 맞도록 도로명주소 체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교육을 바탕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위치나 길을 안내할 때, 법정동이나 특정건물대신 도로명을 통해 공간적 위치를 인지할 수 있도록, 공간적 위치를 파악하기 쉬운 대표적인 도로명들을 선별하여 부각시키고 홍보할 필요가 있음.

○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한 도로명주소 노출 증가

- 도로명주소의 활용도가 공공기관, 우편물, 택배 등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를 자주 노출시키고, 지번주소를 혼용할 수 있는 상황을 줄여야 함.
- 주민들과 방문객들의 쉬운 위치·길 찾기를 위해서, 보행자위주의 버스정류장, 교차로 및 골목길·이면도로 등에 도로명 안내시설물 확대 설치가 필요.
- 관내 민간부문 사업장들의 홈페이지, 영수증, 명함 등에 도로명주소 기입전환을 장려하거나 비용을 지원하여, 지번주소 사용을 억제하고 이용자들이 생

활 속에서 도로명주소를 자주 접하도록 해야 함.

- ‘도로명 안내시설만을 활용해 길찾기’, ‘특정도로명 마라톤 대회’ 등 여러 가지 행사나 축제시 도로명을 자주 노출시키는 기획을 통해 생활화 시켜야 함.

○ 도로명기반 공동체커뮤니티 구축

- 기존 지번주소에서 ‘내가 속해있는 동(마을)’에서 느끼는 생활공동체의 소속감을 도로명주소에서도 ‘내가 속해있는 도로명’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정서적 유도 전환이 필요함.
- ‘본인집이 속해있는 도로명의 기·종점 알기’, ‘도로명기반 지역주민 단합대회 또는 동호회’, ‘내가 주로 이용하는 도로명들 알기’, ‘OO업체들로 특화된 OO거리’ 등 도로명에 대한 소속감과 정서적 공동체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도로명주소기반 정책활용 및 신성장사업 확충

- 도로명주소의 위치·길 찾기 장점을 다른 중요 시책이나 신성장사업에 연계하여 도로명주소의 장점과 잠재성을 부각시킬 필요성이 있음.
- 응급 및 위험상황시 도로명주소는 응급출동 대응을 신속하게 유도할 수 있는 기능이 우월하므로, 안전사고 대응을 위해 다중 이용시설이나 위험상황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도로명안내시설의 추가 설치 필요하며, 안전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도 도로명주소를 적극 활용하여야 함.
- 제4차 산업혁명은 공간정보기반의 데이터를 중요시하며, 도로명주소는 이 점에서 매우 유리하므로 도로명주소를 활용한 드론 택배, 자율주행차 등 신성장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제목 차례

제1장 서론	3
제1절 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방법 및 내용	4
1. 연구의 방법	4
2. 주요 논의사항	5
3. 연구결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5
제2장 도로명주소 추진현황	9
제1절 주소개편 개요	9
1. 주소의 개념과 역사	9
2. 지번주소의 문제점 및 도로명주소의 도입 필요성	10
제2절 도로명주소 도입 및 추진현황	13
1. 도로명주소 개념 및 목적	13
2. 도로명주소의 도입 배경	13
3. 도로명주소 사용방법	15
제3장 선행연구 및 사례조사	25
제1절 도로명주소 선행연구	25
1. 새주소 제도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전략 활성화 방안	26
2.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과제	27
3. 경남지역 도로명주소 사업의 추진 실태와 정책과제	28
4.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개선과제	29
제2절 국내 도로명주소정책 사례조사	30
1. 행정안전부	30
2. 경기도 시흥시	33
3. 경상남도	35
4. 강원도 평창군	36

제3절 해외 도로명주소정책 사례조사	38
1. 프랑스	38
2. 영국	41
3. 스페인	43
4. 이탈리아	46
5. 호주	49
6. 뉴질랜드	52
제4절 시사점	55
제4장 세종시 도로명주소이용 현황분석	61
제1절 세종시 도로명주소개선관련 정책	61
1. 세종시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61
2. 세종시 도로명주소개선 정책	65
3. 세종시 도로명주소 생활화 사례	67
제2절 세종시 설문조사 분석	70
1. 설문조사 개요 및 응답자 기본정보	70
2. 도로명주소 인지도 및 숙지도 분석	74
3. 도로명주소 활용도 분석	79
4. 도로명주소 만족도 분석	84
5. 도로명주소 불편 및 개선사항	87
제3절 설문분석 시사점 및 결과비교	92
1. 설문분석 시사점	92
2. 설문분석결과 비교	95
제5장 도로명주소 활성화방안	101
제1절 도로명주소의 쟁점사항	101
1. 높은 인지도 대비 일상생활에서 낮은 사용률	101
2. 도로명주소 체계 및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	101
3.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에 대한 문제	102
4. 기능 및 홍보의 문제	103
제2절 세종시 도로명주소 활성화방안	104
1.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한 맞춤형 홍보 및 교육	104

2. 편의성향상을 위한 도로명 개선	104
3. 지번주소 혼용상황 감소	106
4. 공동체 커뮤니티중심으로의 정서적 전환	107
5. 도로명주소의 기능적 장점 및 잠재성 강조	108
제6장 결 론	113
제1절 연구결과 종합	113
1. 도로명주소 도입 및 추진목적	113
2. 도로명주소 선행연구 및 국내외 사례	114
3. 세종시민대상 도로명주소 설문결과	114
4. 세종시 도로명주소 활성화 방안	116
제2절 정책 제언	117
1. 지역별·계층별 맞춤형 홍보 및 교육 정책	117
2. 도로명주소 개선 가이드라인 구축	119
3.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한 도로명주소 노출 증가	120
4. 도로명기반 공동체커뮤니티 구축	121
5. 도로명주소기반 정책활용 및 신성장사업 확충	122
부 록	127
제1절 도로명주소법 및 세종시 도로명주소 조례	127
1. 도로명주소법	127
2.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145
제2절 도로명주소 설문지	151
1. 세종시민 대상 도로명주소 설문지	151
참고문헌	155

표 차례

[표 2-1] 시대별 주소표기법	9
[표 2-2] 전통적 주소 표시 방법	10
[표 2-3] 국가별 주소 표시 방법	11
[표 2-4] 도로명주소 관련 법률	13
[표 2-5] 도로명주소 제도 도입내역	14
[표 2-6] 도로명주소 표기방법	16
[표 2-7]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 비교	16
[표 4-1] 세종시 도로명주소 리스트	61
[표 4-2] 성별	70
[표 4-3] 연령	71
[표 4-4] 직업	71
[표 4-5] 세종특별자치시 거주기간	72
[표 4-6] 거주지	73
[표 4-7] 도로명주소 인지	74
[표 4-8] 응답자 특성별 도로명주소 인지	75
[표 4-9] 거주지 도로명주소 숙지	76
[표 4-10] 응답자 특성별 거주지 도로명주소 숙지	78
[표 4-11] 거주지 도로명주소 외우지 못한 이유	79
[표 4-12] 도로명주소 활용	80
[표 4-13] 응답자 특성별 도로명주소 활용	81
[표 4-14] 주로 사용하는 주소	82
[표 4-15] 도로명주소 사용 분야	83
[표 4-16]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활용 경험	83
[표 4-17] 지번주소를 사용하는 곳	84
[표 4-18] 도로명주소 만족	84
[표 4-19] 응답자 특성별 도로명주소 만족	86
[표 4-20] 더 편리한 주소	87
[표 4-21] 도로명주소 불편한 점	88

[표 4-22] 도로명주소 정착에 효과적인 시책	89
[표 4-23] 도로명주소 개선사항	90
[표 4-24] 지번주소 사용이 더 편리한 응답자 특성	94
[표 4-25] 도로명주소 설문조사 비교	98
[표 6-1] 주요 설문분석결과	115

그림 차례

[그림 2-1] 도로명주소 표기방법	16
[그림 2-2] 도로명주소 부여 예시도	17
[그림 2-3] 지점별 도로명판	18
[그림 2-4] 건물번호판	19
[그림 2-5]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20
[그림 2-6] 모바일을 통한 도로명주소 검색	21
[그림 3-1] 도로명주소 홍보포스터	33
[그림 3-2] 도로 안내시설	38
[그림 3-3] 하상도로 내 안내시설	39
[그림 3-4] 벽면형 도로 안내표지판	39
[그림 3-5] 건물번호판 설치 모습	40
[그림 3-6] 런던의 우편번호 구역	41
[그림 3-7] 런던의 도로명판	42
[그림 3-8] 런던의 건물번호판	42
[그림 3-9] 가로등 위치표시판	43
[그림 3-10] 지주식 도로명판	43
[그림 3-11] 벽면형 도로명판	44
[그림 3-12] 다양한 형태의 건물번호판	44
[그림 3-13] 건물번호 사이에 신규로 부여한 건물번호	44
[그림 3-14] 지주식 도로명판	45
[그림 3-15] 벽면형 도로판	46
[그림 3-16] 건물 번호판	46
[그림 3-17] 벽면형 도로명판	47
[그림 3-18] 변경 전 후 도로명 병행 표시 벽면형 도로명판	47
[그림 3-19] 건물번호판	47
[그림 3-20] 지주식 도로명판	48
[그림 3-21] 건물번호판	48
[그림 3-22] 차량용 도로명판 설치사례	49

[그림 3-23]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사례	49
[그림 3-24] 거주용 건물의 건물번호판 설치사례	50
[그림 3-25] 공동거주 건물 상세주소 사용 건물번호판 설치사례	50
[그림 3-26] 호수별 건물번호를 부여받은 건물의 건물번호판 설치사례	50
[그림 3-27] 지역별 관광안내판 설치 사례	51
[그림 3-28] 차량용 도로명판 설치사례	52
[그림 3-29]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사례	52
[그림 3-30] 벽면형 도로명판 설치사례	53
[그림 3-31] 거주용 건물의 건물번호판 설치사례	53
[그림 3-32] 공동거주 건물 상세주소 사용 건물번호판 설치사례	54
[그림 3-33] 호수별 건물번호를 부여받은 건물의 건물번호판 설치사례	54
[그림 3-34] 가지번호 건물의 건물번호판 설치사례	54
[그림 4-1] 도로명주소 안내도	65
[그림 6-1] 도로명주소 정책제언	117

서론

제1절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내용

1장

제1장 서론

제1절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의 전면사용이 의무화되어, 민원서류나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에는 반드시 도로명주소가 기재되어야만 처리가 가능해짐.
- 시민들은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인지하고는 있지만, 실생활에서 이용할 때 여전히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음.
- 세종시 도로명주소 사용 및 활용실태 등을 조사하여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개선 및 정책방안이 필요함.
- 세종시민들을 위한 지역별, 계층별 맞춤형 개선방안을 통해 효과적인 적용이 필요함.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세종시민들의 도로명주소 인지도, 활용도 및 만족도,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 실태 등을 조사하여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개선 및 정책방안을 도출하기 위함.
-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가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 선도적인 모범도시로서 위상 제고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제2절 연구방법 및 내용

1. 연구의 방법

- 도로명주소관련 연구 및 정책 사례조사(타지자체 및 해외), 관련계획 및 법령조사
- 성별, 연령별 및 계층별 설문대상 표본을 선정하여, 설문지 문항 설계 (세종시민대상 설문조사)
- 설문조사결과 분석 및 시사점 도출 (기초통계분석, 세종시 2016년 결과 및 타지자체결과와 비교분석)
-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유의미한 정책 개선 및 대안 도출

주요내용	소요기간	(5) 개 월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연구계획 및 착수		■					착수 및 세종시 협의
설문조사 및 분석			■	■			설문조사 (세종시민대상)
문제점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 도출					■		자문회의
보고서 작성						■	

2. 주요 논의사항

- 세종시민들의 도로명주소 인지도, 활용도 및 만족도 조사
- 세종시민들의 도로명주소 관련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 조사
- 설문조사를 분석하여 도로명주소의 쟁점사항과 개선방안 도출
- 도로명주소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제시

3. 연구결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 시민들의 도로명주소 인지도, 활용도 및 만족도 등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및 활성화 전략 제시
- 2018년도 세종시 도로명주소 홍보방향 설정 및 시책 추진에 활용
-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사항은 중앙정부에 개선 건의

도로명주소 추진현황

제1절 주소개편 개요

제2절 도로명주소 도입 및 추진현황

2장

제2장 도로명주소 추진현황

제1절 주소개편 개요

1. 주소의 개념과 역사

1)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간 관계

- 주소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나 기관, 회사 등이 위치하고 있는 곳을 이름으로 표현한 것이며, 각종 법률관계의 기준이자 일상생활의 중심이 되는 곳임.
- 대부분 국가에서 주소는 곧 도로명주소로 인식되어 일반적으로 ‘주소, Address’로 표현되지만 부여방법 등 기술적 설명을 할 때에는 ‘도로명주소, Street Address’로 표현함.
- 우리나라는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주소의 표현 방식을 지번주소와 구분하기 위해 도로명주소라는 용어를 법률용어로 사용하게 됨.

2) 우리나라 주소의 역사적 흐름

- 조선시대에 사용해 오던 주소는 거리(도로)를 중심으로 하였으나, 일제에 의해 지번주소를 사용하였고, 다시 거리(도로) 중심의 주소를 사용하게 됨.

[표 2-1] 시대별 주소표기법

구분	조선시대	대한제국	일제시대	해방이후	도로명주소법 제정
도로명	육조거리	육조거리	광화문동	세종로	세종대로

- 조선 초기부터 사용한 주소의 표현방식은 건물마다 번호를 부여하고, 5채가 되면 하나의 통으로 묶는 통·호 방식의 주소(오가작통법, 五家作統法)임.

[표 2-2] 전통적 주소 표시 방법

구분	주소 표시 방법
주소	한성부 찬성방 우교계 제5통 제3호
토지표시	강릉부 우계면 덕자 제28호

- 일제가 1910년 근대적 토지제도를 확립한다는 명목 아래 토지수탈 및 조세징수의 목적으로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이 완료되면서 지번을 주소로 사용하게 됨.
- 광복 이후 일제 강점기에 사용했던 주소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1948년 일제방식의 명칭을 없애는 작업을 추진한 바 있음.
- 1969년, 주소개편을 검토하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종이로 된 문서의 전환이나 전국적 개편에 대한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하여 실패함.
- 그 후, 1996년 주소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데 주요한 원인임을 다시 확인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로명주소 체계를 도입하였고, 2007년 「도로명주소법」을 제정·시행하여 2011년 7월 29일부터 법정주소로 사용하게 됨.

2. 지번주소의 문제점 및 도로명주소의 도입 필요성

1) 지번주소 문제점

- 지번주소체계는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져 사용되어 온 것으로서, 도로를 따라 체계적으로 부여한 것이 아닌, 사행식(蛇行式)으로 부여한 것임.
- 또한 급속한 경제개발과 도시화, 산업화로 인하여 지번이 수차례 분할·합병되면서 배열이 불규칙하게 되었고, 하나의 지번에 여러 개의 건물이 배

치되면서 위치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지 못하게 됨.

- 이와 같은 지번주소체계는 집 찾기의 불편함, 화재·범죄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물류비용의 증가와 같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양산하고 있음.
- 또한 OECD 국가 등 대부분 나라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기반하고 있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기에 지번주소는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음.

[표 2-3] 국가별 주소 표시 방법

구분 나라별	주소 표시 방법				
	미국	건물번호	도로명	시명	주명
	707	Texas avenue	College Station	Tx	77840
영국	건물번호	도로명	시명	우편번호	
	60	Buckingham gate	London	SW1E 6AJ	
프랑스	건물번호	도로명	우편번호	시명	
	125	Rue de Grenelle	75007	Paris	
러시아	우편번호	도로명	건물번호	출입구번호	호수
	117588	Litobski Bulibar	D-6	Kor-1	Kb-6 2
독일	도로명	건물번호	우편번호	시명	
	Sargomunde Str	38	10116	Berlin	
스위스	건물번호	도로명	우편번호	시명	
	2	Rue dv simplon	1006	Lausanne	
중국	시명	구명	도로명	건물번호	
	北京市	朝陽區	新源南路	6號	

2) 도로명주소 도입 이유

- 지번주소는 일제강점기에 도입되어 약 100년간 사용해 왔으나, 도시화·

산업화 등 각종 개발로 인하여 지번의 순차성이 훼손되었고, 이로 인하여 위치 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에 놓임.

-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법정주소 외 건물명을 부가적으로 적어야 주소를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우리나라에 지번주소를 강제로 도입했던 일본도 1963년부터 지번주소를 가구(街區)방식의 주소 또는 도로명주소로 바꿔 나가는 실정임.
- 이러한 도로명주소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한 G20 국가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던 주소로서, 국제적으로 보편화 된 주소임.
- 도로명주소를 도입할 경우 주소체계가 정비되어 길 찾기가 편리해지고, 경찰·소방 등 응급 구조기관의 현장 대응력이 제고되며, 물류비용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대폭 줄어들어 국가경쟁력 향상 및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됨.
- 또한 일제의 잔재 청산 취지도 내포하고 있어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음.

제2절 도로명주소 도입 및 추진현황

1. 도로명주소 개념 및 목적

- 도로명주소는 건물번호를 주소로 사용했던 역사적 배경,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보편성, 위치 찾기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도로마다 이름을 부여하고, 그 도로를 따라 위치한 건물에 번호를 체계적으로 부여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표현하는 주소임.
- 도로명주소의 도입목적은 도로명주소를 통해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도로명주소법」은 2006년 10월 4일 제정되어 2007년 4월 5일 시행되었고, 주소에 관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토록 규정받고 있음.

[표 2-4] 도로명주소 관련 법률

구분	종류
법	도로명주소법
령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시행규칙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도로명주소대장규칙,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예규	도로명주소 정보체계 운영규정

2. 도로명주소의 도입 배경

- 읍·면·동과 같이 지번을 붙여 사용하던 주소 체계는 1910년 일제 강점기 시절 근대적 토지를 수립한다는 명목과 조세 징수 등 수탈 목적을 가지고 전 국토를 대상으로 실시한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음.
- 지번형태의 주소 체계는 급속한 경제개발과 인구의 증가, 도시화, 산업화 등으로 인하여 수차례 분할 합병되었고, 이로 인해 지번형태의 주소 체계가 불규칙한 배열을 이루게 됨.

- 또한 한 지번에 여러 건물이 분포하거나 여러 지번에 한 건물이 분포하는 등 지번주소가 위치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지 못함에 따라 각종 사고와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곤란해졌고, 물류비용의 증가와 같이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이러한 지번주소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1970년부터 주소체계를 전환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실시하지 못함.
- 이후 1996년 7월 대통령비서실 「국가경쟁력 강화기획단」에서 도로명 방식의 주소체계 도입을 결정하였고, 2006년 10월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도로명주소를 법적주소로 사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표 2-5] 도로명주소 제도 도입내역

일자	추진내역
1996. 7.	대통령비서실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에서 추진」 지시
1996. 9.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실무기획단 규정」제정
1996. 11.	내무부에 실무기획단 구성
1997. 1.	1차 시범사업추진(강남구, 안양시)
1998. 1.	2차 시범사업추진(안산시, 청주시, 공주시, 경주시)
1998. 7.	서울시 사업조기 시행 확정
1998. 12.	1999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계획 수립
2000. 12.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효과분석 및 발전방향」연구용역
2001. 1.	지적법제16조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관리에 관한 근거 마련
2002. 1.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에 관한 규정 시행(대통령령)
2002. 9.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 「50대 활용방안」 시·도 통보
2003. 8.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합리적 추진 방안」 연구용역
2004. 3.	도로명사업을 동북아물류중심추진 로드맵시행 추진과제로 채택
2004. 5.	도로명사업의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시달
2005. 1.	대통령비서실 지시로 국무조정실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에 대한 정책품질분석 실시(국무조정실)
2005. 4.	대통령비서실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점검하도록 지시
2005. 7.	국무조정실에서 점검 후 행자부에서 사업 필요성 등 당위성을 재검토
2005. 7.	행자부에서 도로명사업 혁신추진전략 및 법률시안 작성
2005. 10.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안 발의(강철일 의원 외 23인)
2006. 4.	행자위 일부수정 의결(2011년 12월 31일까지 기존 주소 병행)
2006. 8.	법사위 일부수정 의결(건물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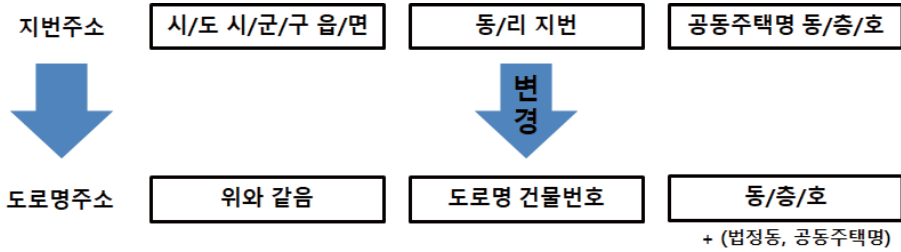
2006. 9.	제262회 정기국회 본회의 심의·의결
2006. 10.	동법 제정 공포
2007. 1.	행자부 새주소정책팀 신설
2007. 4.	동법 시행, 동법 시행령 제정 시행
2007. 8.	도로명주소 정보체계 운영규정 제정 공포
2008. 1.	법 시행전지역의 도로명주소사업 준비지침 마련 통보
2008. 4.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
2008. 4.	도로명주소 정보체계 운영규정 개정
2008. 9.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규칙 제정 공포
2008. 10.	감사원감사
2009. 10.	동법 개정안(1차) 국무회의 의결
2009. 1.	동법 시행령 개정(2차) 시행
2009. 2.	행안위 소위 법률 개정사항 수정 가결
2009. 3.	법사위 법률 개정사항 수정 가결
2009. 3.	2개 이상 행정구역간 걸친 도로 관련 업무처리 지침 통보
2009. 4.	동법 개정(2차) 시행
2009. 6.	정비사업관련 국비 및 특교세 내시 확정 통보
2009. 6.	도로명주소전문가 교육과정 개설
2009. 6.	최초 광역도로명 결정 고시
2009. 7.	동법 시행령 개정(3차)
2009. 8.	동법 시행규칙 개정(2차) 시행, 도로명주소대장규칙 제정 시행
2009. 8.	도로명주소 정보체계 운영규정 개정
2009. 8.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규칙 제정 시행
2011. 7.	도로명주소 법정 고시
2013. 2.	국가기초구역 안정적 정착 및 활용 계획 시달
2013. 3.	상세주소부여 업무처리 규정 시달
2014. 1.	도로명주소제도 전면 시행
2014. 10.	대학, 종합병원, 공장 등 건물군의 상세주소부여 지침 시달
2015. 8.	우편번호 5자리 시행

자료: 홍임이, 도로명주소제도의 발전 방향 모색, 2016

3. 도로명주소 사용방법

1) 표기방법

- 도로명주소는 종전의 지번주소와 시·군·구(행정구 포함), 읍·면까지는 같지만 동·리 + 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함.



[그림 2-1] 도로명주소 표기방법

[표 2-6] 도로명주소 표기방법

구분	지번주소	새주소
단독주택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40-5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3길 6
업무용빌딩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가 100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66. 00호
공동주택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83-10 00아파트 00동 0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58, 00동 00호

- 도로명주소 표기는 건물이 구분되는 경우 동, 층, 호를 추가로 표기하되 동과 공동주택의 이름은 참고항목으로 기재 가능함.
- 지번주소의 지번은 ‘번지’로 읽고,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는 ‘번’으로 읽음.

[표 2-7]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 비교

구분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쓰기	서초동 100-5	적돌길 100-1
읽기	서초동 백의 오번지	적돌길 백의 일번

2) 부여방법

- 도로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이 원칙이며, 직진성, 연속성의 원칙을 지니고 있음.
- 기초번호 부여는 20m간격이 원칙이며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사용이 원칙임.

- 도로명 부여는 큰길의 경우 지명, 역사, 기존도로명 등을 활용한 명사와 대로, 로와 같은 도로의 위계를 사용하여 분기되는 작은 길은 큰길의 도로명 + 체계적인 숫자를 사용함.
- 건물번호는 주된 출입구에 인접한 도로의 기초번호 사용을 원칙으로 함.



[그림 2-2] 도로명주소 부여 예시도

3)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보는 방법

(1) 도로명판 보는 방법

- 도로명판은 「대로·로·길」로 구분되는 도로의 폭에 따라 크기가 다르며, 도로명, 기초번호, 방향표시(화살표), 로마자를 표기함.
 - ‘도로명’으로 해당 방향 도로의 도로명을 확인한 뒤 ‘기초번호와 화살표’로 찾고자 하는 건물번호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음.
- 도로명판은 도로의 시작지점과 중간지점, 끝지점에 설치함.
 - 설치위치에 따라 시작지점용, 진행방향용, 양방향용, 끝지점용으로 구분함.



[그림 2-3] 지점별 도로명판

(2) 건물번호판 보는 법

- 건물번호판은 「대로·로·길」로 구분되는 도로의 폭에 따라 크기가 다르며, 도로명과 건물번호가 표기되어 있음.
- 건물번호판은 건축주에게 부착의무가 있으며, 건물의 주된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함.



[그림 2-4] 건물번호판

4) 도로명주소 검색 방법

(1) 도로명주소 검색 매체

- 도로명주소 검색 매체는 인터넷, 모바일, 전화 등이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인터넷: 도로명주소 안내홈페이지(<http://www.juso.go.kr>)
 - 모바일: 「주소찾아」모바일 서비스
 - 전화: 110(정부민원 콜센터), 120(자치단체 민원콜센터)

□ 인터넷을 통한 검색 방법

- 도로명주소 안내홈페이지에서 지번주소로 도로명주소를 조회하거나 도로명주소로 위치를 찾는 등의 검색 기능 및 도로명주소 자료를 다운받거나 안내도를 교부신청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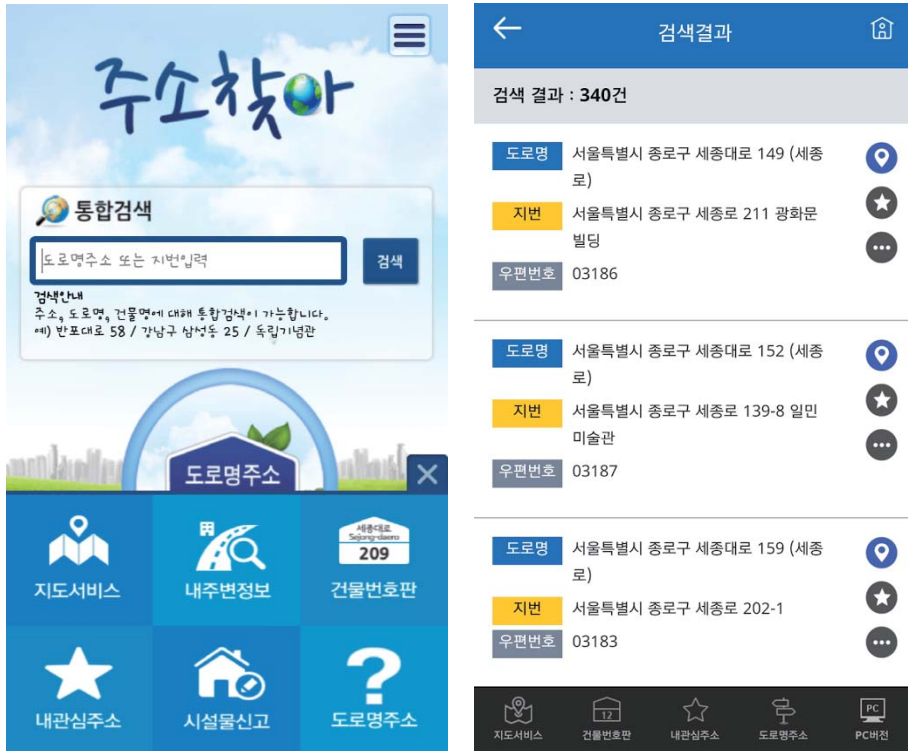


[그림 2-5]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http://www.juso.go.kr>)

- 주요포털(네이버, 다음 등)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주소와 주출입구,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으로 정확한 위치를 안내하고 있음.

□ 모바일을 통한 검색 방법

- 「주소찾아」앱을 설치하면 모바일을 이용하여 도로명주소 검색이 가능함.
- 주요 서비스로는 지도서비스, 내주변정보, 건물번호판, 내관심주소, 시설물신고, 도로명주소 등이 있음.



[그림 2-6] 모바일을 통한 도로명주소 검색(주소찾아)

□ 전화를 통한 검색 방법

- 전화를 통한 도로명주소 검색 방법은 110(정부민원콜센터), 120(자치단체 민원 콜센터)을 통해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또는 도로명주소를 지번주소로 조회가 가능함.

선행연구 및 사례조사

제1절 도로명주소 선행연구

제2절 국내 도로명주소정책 사례조사

제3절 해외 도로명주소정책 사례조사

제4절 시사점

3장

제3장 선행연구 및 사례조사

제1절 도로명주소 선행연구

1. 새주소 제도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전략 활성화 방안

(김준현 외, 2011)

- 이 연구에서는 새주소표기와 관련된 인식, 활용도가 저조하고, 특히, 연령, 직업, 학력, 주거형태별로 그 인식이나 인지도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시간·경제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국가정책이 실효성 있는 법·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전략적 방법이 요구된다고 명시하였음.
- 설문조사 분석 결과
 - 연령별로 청소년계층 및 60~70세와 같이 고령으로 갈수록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지도가 평균에 비해 낮게 나타남.
 - 직업별 분석에서는 직장인의 경우 언론매체, 인터넷 활용 등을 통해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으나, 무직으로 분류한 기타, 주부의 경우 타 직종에 비해 인지도가 낮았음.
 - 주거지형태별 분석에서는 단독주택 거주자에 비해 연립·다세대·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음.
 - 결과를 종합하면 청소년 연령대의 학습자와 60~70대의 고령자, 사회참여 및 소통의 기회가 적은 주부가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으며, 해당 집단에 대한 맞춤형 홍보 및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홍보 및 교육을 통한 개선방안
 - 홍보 및 교육을 위해서는 다양한 대상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역세권 건

물이나 버스 정류장, 지하철, 전철, 철도역, 관공서 등에 쉽게 이용 및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책자를 배치하는 방법, 대중교통 안내방송에서 도로명과 건물명을 방송하는 방법을 활용하면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 또한 대중매체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홍보영상을 광고하여 주부, 무직자, 고령자는 물론 다양한 대상이 함께 시청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인터넷, 휴대폰 등에서도 기존 지번과 현 지번을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2.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1)

○ 이 연구는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지도가 저조한 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도로명주소를 국민들의 실생활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검토를 하였음.

○ 도로명주소 미정착 원인

- ① 강력한 사업 추진체계의 부재
- ②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과의 공조 결여
- ③ 제도 도입 전 충분한 법적 검토가 미흡함
- ④ 불합리한 도로명 부여로 인한 주소체계의 효용 감소
- ⑤ 홍보의 부족

○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제언

- ① 강력한 추진체계의 확립 요구
 - 도로명주소 사업만을 전담하는 별도의 정규조직을 만들어 업무를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② 공공기관 및 민간 분야의 협조 필요
 - 정부는 관계 부처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예산 확보, 법적 검토, 민간 부문은 주소전환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고려.

③ 도로명주소의 사용 편리성 제고

- 이미 부여된 도로명주소라도 주민들이 기억하기 어렵거나 법적주소로서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주소를 변경할 수 있는 방안 검토.

④ 적극적인 홍보 사업의 추진

- 지상파 TV, 지하철, 신문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민 체감형 홍보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중심의 현장 밀착형 홍보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3. 경남지역 도로명주소 사업의 추진 실태와 정책과제

(경남발전연구원, 2011)

- 이 연구는 도로명주소 사업에 대한 도민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적극 홍보할 필요성에 입각하여 경남지역 도로명주소 사업의 추진실태를 분석하고, 도로명주소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설문조사 분석
 - 경남의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개 시·군의 도로명주소 담당자에게 크게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 도로명 부여, 홍보에 관한 조사를 총 2회에 걸쳐 실시하였음.
- 도로명주소관련 문제점
 -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 관련 문제점으로는 첫째, 주민 반대라든가 도로명주소 전환에 따른 주민의 이해 부족이나 잦은 업무방침 변경 등으로 인한 정책집행 상의 혼선, 둘째,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추진 상의 곤란, 셋째, 일부 시·군에 있어서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저조한 개최 실적 및 형식적인 운영, 넷째,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

및 규칙의 개정 미흡이 지적되었음.

- 도로명 부여에 관한 문제점으로는, 첫째, 도로명 부여방식의 시·군별 차이와 유사·동일한 도로명 존재에 따른 도민의 혼란 가중, 둘째, 유관 기관들과의 협의 부족 및 공식적인 의견·정보 반영의 불충분함, 셋째, 주민 의견 수렴·반영 부족 등이 지적되었음.
- 홍보 등에 관한 문제점으로는, 제대로 된 홍보의 부족과 기존 주소의 병행사용으로 도로명주소의 사용률이 낮고, 주민들은 무관심하거나 시행되는 이유조차 알지 못하는 등 인식도가 낮다고 지적되었음.

○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제언

- 도로명주소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첫째, 주체별 책임 분담에 따른 협치행정의 구현임. 모든 주체들이 일정 책임을 분담하고, 결과에 대해서도 공동 책임을 지려는 자세가 중요함.
- 둘째, 홍보방법의 개선임. 도로명주소의 사용이 2012년부터 법적으로 의무화되기 때문에 기존 홍보방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홍보효과가 높은 것으로 검증된 타 지자체의 방법을 벤치마킹, 집합주택의 경우 새 주소 홍보 스티커 부착범위 확대, 웹사이트 상에서 사용하는 모든 주소의 새주소 기재 유도 등과 같은 차별화된 홍보방법을 추가로 실시해야 하며,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등에 대한 반복적인 홍보·교육이 필요함.
- 셋째, 법·제도적 장치의 정비임. 도로명주소의 생활화를 위해 지자체 차원의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의 내용은 개정해 나가야 함. 또한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통한 도로명주소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이 요청되고 있음.
- 넷째, 전담인력의 보강임. 새 주소로의 법적 주소 전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국민의 관념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정부·지자체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함. 따라서 신속·정확한 업무 추진을 위해 전담인력을 증원 배치해야 함.

4.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개선과제 (경기연구원,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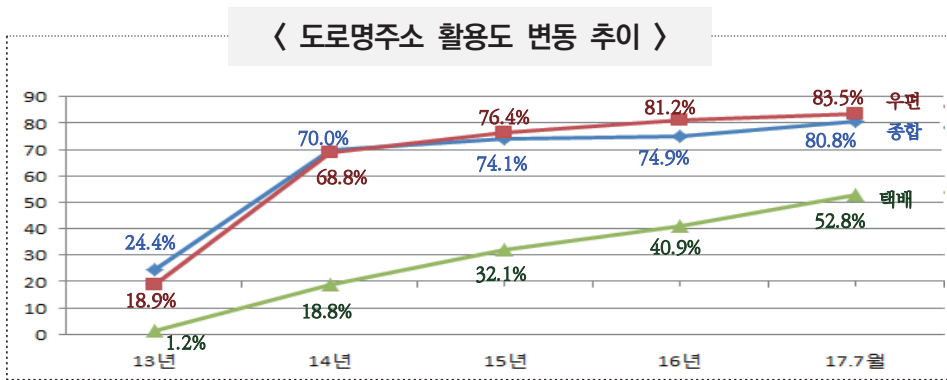
- 10여 년간 4,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법정주소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전환하였으나, 도로명주소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여전히 불편과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
- 경기도민의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편이나 표기법과 부여방식에 대한 이해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실생활에서도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혼용하거나 지번주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이와 같은 이유는 도로명주소 사용이 오히려 불편하거나, 지번주소 사용 때와 차이점이 없기 때문임.
- 실제 주소사용에 있어 도로명주소는 민원업무나 우편물과 같이 공공 부문에서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실생활과 밀접한 음식배달, 길찾기 부문과 같이 민간부문에서 도로명주소의 이용은 여전히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
- 도로명주소의 정착을 위해서는 도로명주소의 개선 및 정착방안을 마련해야 함.
 - 개선방안의 경우 지번주소와의 혼용하지 않도록 도로명주소 미사용 부문에 대한 전환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도로명주소가 지나치게 길어 외우기 어려운 부분이나, 지역명, 외래어 표기 등으로 위치를 가늠하기 어려운 부분은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함.
 - 정착방안의 경우 도로명주소 사용법과 표기법 등을 적극 교육하고 홍보하면서 부족한 점은 중장기적으로 보완 대책을 마련하며, 도로명주소 미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함.

제2절 국내 도로명주소정책 사례조사

1. 행정안전부

- '14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이후 안착기(활용도 80.8%)에 점차 진입
- 도로명주소 활용도가 4년간 평균 +3%, '17년은 2배인 +5.9% 증가

* 도로명 16만개, 건물번호 620만개, 상세주소(동·층·호) 76만개



-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 생활화, 전 국토에 종합적인 주소체계 구현, 주소기반 4차산업 창출을 담은 '제3차 주소정책 추진 종합계획 (2018~2022)'을 2017년 12월 27일 발표함.

〈비전과 목표〉

- ❖ (비전) 주소기반 인프라를 통해 성장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 ❖ (목표) 추진체계 안정화를 기반으로 3대 목표 제시
 - (국민 생활 편의) 도로명주소 생활화
 - (국민 생활 안전) 전 국토에 종합적인 주소체계 구현(주소정보간 융합)
 - (미래 성장 동력) 주소기반 4차 산업혁명 촉진 지원

〈주요내용〉

【I. 국민 생활 편의】도로명주소 생활화

- (상세주소 확대) 2세대 이상 임차건물 18만동, 근린상가 13만동 상세 주소 부여하여 세입자 주거복지와 중소기업인 영업 지원*
- (도로명주소 개선) 긴 도로명·건물번호 등 국민불편요소 정비 및 누락된 7천개 도로와 3만개 건물군의 동(棟) 마다 도로명주소 부여
- (안내인프라 확충) 도로명판 소요의 75%(현 50%) 확충(36만개 추가 설치), 자율형 건물번호판 전체 건물의 4%(현 1%) 확대(20만개 추가 설치 유도
- (대 국민 활용지원) 국민 불편사항 발굴·해소, 스토리텔링 홍보, 분야별 활용 지원, 검색체계 개선 등 지속 추진

【II. 국민 생활 안전】전 국토에 종합적인 주소체계 구현

- (도로변 안전사고 대응) 육교승강기 등 다중 이용시설이나 국민안전시설에 기초번호 부여, 전신주 등 그 외 시설에는 기초번호 표기
- (산악 등 안전사고 대응) 1.2㎢당 1개 이상의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현 2.2만개, 추가 2.2만개) 및 산악 등에서 내 위치 알기 서비스체계 구축 등
- (통일성 있는 구역서비스) 주민센터, 학군 등 각종구역을 국가기초구역 기반으로 정비(5년간 55% 목표), 대국민 구역일괄서비스체계 구축

【III. 미래 성장 동력】주소기반 4차 산업혁명 촉진 지원

- (미래도시 맞는 주소체계 마련) 대단위 지하도시, 입체도시, 고밀도 도시에 맞는 입체주소체계 마련
- (주소기반 4차 산업 창출) 위치기반산업(LBS·IoT) 활성화를 위한 주소 정보정비·구축및주소정보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연계한 신산업 창출
- 주소정보 활용지원센터 구축으로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
- (한국형 주소체계 해외 진출 지원) ODA사업 등을 통해 진출

정부가 긴 도로명주소를 정비하고 세입자나중소상공인에게 상세주소를 확대 부여한다.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 생활화, 전 국토에 종합적인 주소체계 구현, 주소기반 4차 산업 창출을 담은 '제3차 주소정책 추진 종합계획'(2018~2022년)을 27일 발표했다.

우선 생활 편의를 위해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추진한다. 전체 도로명주소중 6%를 차지하는 7자 이상 도로명과 3자리 이상 건물번호 10%, 100m 이상 긴 종속구간 3% 등이 정비 대상이다. 3만개 건물군과 동에도 도로명주소를 부여한다. 2가구 이상 임차건물 18만동과 근린상가 13만동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세입자와 중소기업인에게 동·층·호별로 개별 주소를 부여해 우편·택배 수령 편의성을 높이고 영업장 위치안내를 쉽게 할 계획이다. 도로명판 36만개를 추가 설치해 현재 50% 수준인 도로명판 소요율을 75%까지 올린다. 자율형건물번호 판도 현재 1% 수준에서 4% 정도로 확대하기 위해 20만개를 추가 설치토록 유도한다.

육교승강기·터널·지하도·육교 등 다중 이용시설과 옥외지진대피소·비상수급시설 등 국민안전시설에 '도로명+기초번호'를 부여해 위치신고와 긴급출동을 용이하게 한다. 산악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 5년간 1.2km²당 1개 이상 국가지점번호판 2만2000여개를 추가 설치한다. 산악·해양 등에서 모바일로 국가지점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내 위치 알기 서비스 체계'도 구축한다.

주민센터, 경찰 등 각종 관할 구역을 국가기초구역으로 정비해서 주소만 알면 해당하는 학교, 주민센터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주소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한다는 게 이번 제3차 종합계획 특징 중 하나다.

사물의 이동이나 실내에 대한 위치표시와 이동경로 안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데다 드론, 드로이드,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 등장으로 주소 기반 신산업 창출 여건이 마련됐다는 게 행안부의 판단이다. 주소체계를 입체화·고도화하고 신기술 연계 주소 기반 산업모델을 개발하고 드론택배,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성장 산업을 지원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고밀도·입체도시에 맞게 주소체계를 고도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성장 산업을 육성해 주소가 4차 산업혁명의 동력이 되는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 <중앙일보>. URL: <http://news Joins.com/article/22237456>



[그림 3-1] 도로명주소 홍보포스터(행정안전부)

2. 경기도 시흥시

- 경기도 시흥시는 시민들의 도로명주소 사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800여개의 도로명판을 추가로 설치하였음. 또한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과 도로명주소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도로명서포터즈 및 경찰소방 등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 20명이 현장 로드체킹을 실시함.
- 로드체킹을 통해 보행자를 위한 안내시설과 다국어표기가 부족해 불편하다는 다수의 의견이 나왔고, 이에 보행자를 배려한 보행자용 도로명판과 중국어 표기를 확대 설치함.
-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대 설치에 따라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이 없어 주소 찾기에 어려움을 겪었던 시민의 불편이 다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함.

경기도 시흥시는 시민들의 도로명주소 사용에 대한 불편해소를 위해 상반기 특별교부세 2,900만원, 도비 760만원, 하반기 도비 3,300만원과 추경 예산 등을 투입해 9월까지 시 전역에 800여개의 도로명판을 추가 설치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까지 시는 국가지점번호판(외진 곳 신고자 위치파악용)과 기초번호판(도로상 신고자 위치파악용) 1,500여개, 도로명판 4,000여개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를 통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했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고자가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지난달 25일에는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4년 차를 맞이해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과 도로명 주소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도로명주소 서포터즈 및 경찰·소방 등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 20명이 현장 로드체킹을 실시했다.

주변 지역을 잘 아는 주민과 경찰·소방 및 도로명주소 서포터즈 등이 함께 참여해 진행한 로드체킹을 통해 보행자를 위한 안내시설과 다국어 표기가 부족해 불편하다는 다수의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면도로와 골목길, 마을길 등에 보행자를 배려한 보행자용 도로명판과 중국어표기를 확대·설치하기로 했다.

이번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대·설치에 따라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이 없어 주소 찾기에 어려움을 겪었던 시민의 불편이 다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경희 민원지적과장은 “앞으로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설치할 때 시민의 불편해소를 우선으로 주민참여를 확대해 소통하는 참여 행정을 하겠다.”고 말하며, “도로명판 설치시 일부분의 경우 개인 주택 등 외벽에 설치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 <신아일보>. URL: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9561>

3. 경상남도

- 경상남도는 350만 도민 전 계층이 도로명주소를 일상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맞춤형 도로명주소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도로명주소 교육은 도민 전 계층을 어린이, 청소년(초,중,고교생), 중장년층, 노년층으로 구분하여 세대별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음.
- 경상남도는 연령에 따른 계층별 교육을 통해 도로명주소가 어렵고 불편하다는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경상남도(2016.11.22.)

경상남도는 350만 도민 전 계층이 도로명주소를 일상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맞춤형 도로명주소 교육을 지속 추진한다.

도민 전 계층을 어린이, 초중고교생, 중장년층, 황금기 어르신으로 4개 연령대로 구분하여 세대별 눈높이게 맞는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시행한다.

1세대 어린이는 어린이교통공원을 방문하는 연간 10만 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통공원에 설치한 도로명시설물을 이용하여 체험형 교육을 시행한다.

2세대 초중고교생은 방학기간동안 ‘주소찾기’ 앱을 활용한 현장체험, 도로명주소, 국가지점번호로 긴급 구조 요청하기, 부모님께 효도엽서 쓰기 교육을 시행한다.

3세대 중장년층은 공인중개사, 이-통장, 여성단체 등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부여 원리, 검색 방법, 바르게 읽고 쓰기를 중점 교육한다.

4세대는 황금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인복지관,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도로명주소 부여 원리 교육과 바르게 읽고 쓰기 교육을 시행한다.

그 동안 경상남도는 유아시기부터 도로명주소와 친숙해지도록 하기 위하여 도내 6개 어린이교통공원에 도로명 시설물을 설치하여 금년도 8만여 어린이들이 도로명 시설물을 체험했다.

또한, 여름방학동안에는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홍보 자원봉사 체험활동을 시행하여 925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아울러, 공인중개사협회, 여

성단체와 협조하여 다양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였고 노인복지관,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도로명주소가 불편하다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부여 원리 교육과 바르게 읽고 쓰기 교육을 시행하여 왔다.

경남도는 12월중에 금년도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시에 도로명주소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고, 교육의 효과가 가장 높은 2세대 초·중·고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겨울방학에도 ‘도로명주소 홍보 자원봉사’행사를 시행한다.

도로명주소 홍보 자원봉사 행사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은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고 자원봉사 시간(3시간)도 인정받을 수 있다.

박구원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연령대별 맞춤형 홍보 실시로 유아시기부터 도로명주소와 친숙해지고, 도로명주소가 어렵고 불편하다는 어르신들은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로 만들어 350만 전 도민이 도로명주소를 실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자료: <경상남도 도정뉴스>. URL: <http://news.gyeongnam.go.kr/?p=123127>

4. 강원도 평창군

-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과 생활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한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였음.
- 건물번호판에는 주소뿐만 아니라 관광안내, 마스코트 등을 활용하여 누구나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하였고, 범죄예방이 가능하도록 디자인 하였음.
- 또한 다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도로명판석을 설치하여 다가 올 올림픽 뿐만 아니라 관광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강원도 평창군은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용의 생활화를 위해 전국최초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한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진부면 도시재생지구정비사업내에 5기 설치했다고 밝혔다. 건물번호판에는 도로명, 건물번호, 평창관광 QR코드, 힐링문구, 마스코트 등을 활용해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어두운 곳에 설치해 도시환경개선 및 범죄예방이 가능하도록 디자인했다.

군은 진부시내 보도 블록공사와 가로등교체 공사 등이 끝나는 대로 10기도 조속히 설치할 예정이며, 주민과 평창군을 방문하는 내외국인들의 호응과 의견을 수렴, 점차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심재국 군수는 “대관령면과 진부면에 보행자용 다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도로명판석을 횡단보도 인근에 50개소를 설치해 위치안내와 군 관광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 <포커스데일리>. URL: <http://www.ulsanfocus.com/news/articleView.html?idxno=89609>

제3절 해외 도로명주소정책 사례조사

1. 프랑스

○ 도로 안내시설 설치 현황

- 고속도로, 국도 등을 색깔과 번호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도로의 방향성을 고려하여 도로명판을 설치하여 안내하고 있음.



[그림 3-2] 도로 안내시설

○ 하상도로내 안내시설 설치 현황

- 센강 변 하상도로 이면에는 건물의 문과 같은 문양을 만들어 건물번호와 같은 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경찰·소방 등 위치를 알릴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
- 센강을 따라서 설치되어 있는 모든 교각에는 비상상황을 위한 신고

및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위급상황시 표지판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연락하라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음.



[그림 3-3] 하상도로 내 안내시설

○ 벽면형 도로 안내시설 설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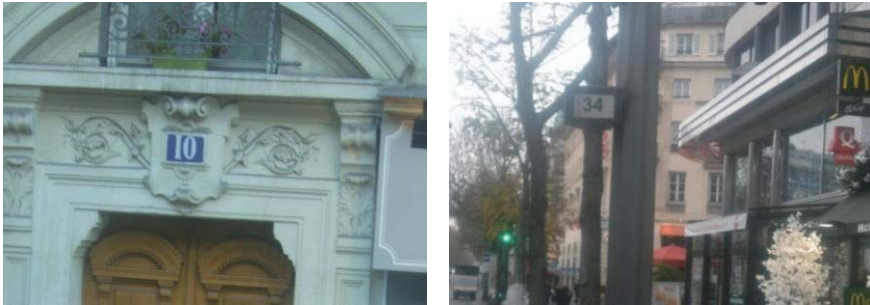
- 건물의 벽면에는 도로의 시작·끝 지점을 안내하는 벽면형 도로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음.
- 벽면형 도로 안내표지판은 블록의 가장자리 건물 벽면 모서리에 도로 표지판을 부착하여 안내하고 있음.
- 명판은 도로명과 함께 도로가 지정된 역사·배경까지 표시하고 있으며, 상단에는 해당 위치의 구역번호도 함께 명시하고 있음.



[그림 3-4] 벽면형 도로 안내표지판

○ 건물번호판 설치 현황

- 주택가 건물번호판은 도로명판과 같이 파란색 바탕화면을 띤 사각형 모양을 유지하고 있음.
- 가로등에는 현재 위치를 나타내는 건물번호판을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가로등 번호만으로 같은 면에 있는 건물의 주소를 파악할 수 있음.



[그림 3-5] 건물번호판 설치 모습

2. 영국

- 런던은 복잡한 도로망으로 인하여 도로명주소 부여 체계가 일정하지 않으나, 좁은 도로까지 고유명사를 활용하여 도로명을 부여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런던 주소체계의 특징은 우편번호를 주소에 포함하는 것으로서, 크게 8개 구역(WC, EC, E, SE, SW, W, N, NW)으로 나누고 중심부부터 외곽으로 고유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함.
- 런던의 주소체계를 살펴보면 우편번호를 통해 대략적인 위치를 짐작할 수 있음.



[그림 3-6] 런던의 우편번호 구역

- 건물번호는 도로의 진행방향에 따라 우리나라와 같이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를 부여하고 있으며, 도로 길이가 짧은 구간은 연속된 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하기도 함.



[그림 3-7] 런던의 도로명판

- 건물번호판은 본번에서 부번을 부여할 때 알파벳을 순차적으로 붙여서 표기하며, 건물번호판이 규격화되지 않아 자유로운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음.



[그림 3-8] 런던의 건물번호판

- 런던의 가로등 위치표시제도
 - 도로를 따라 설치된 가로등은 프랑스와 같이 일정한 번호들이 부여되어 있으며, 설치 간격이 일정함에 따라 해당 위치가 도로 연장 상 어느 위치에 있는지 판단이 가능함.
 - 프랑스 파리의 건물번호를 가로등에 다시 설치한 경우와 차이점을 보이며, 건물마다 번호의 표시가 자유형인 런던에서 가로등에 표시된 번호를 통해 위치를 알릴 수 있어서 용이함.



[그림 3-9] 가로등 위치표시판

3. 스페인

1) 바로셀로나

- 대표적인 계획도시로 알려진 바로셀로나의 신시가지와 구시가지(신시가지인 람블란스 거리와 몬세라도, 구시가지인 고딕지구)에 설치된 도로안내 시설 및 건물에 설치된 건물번호판의 현황 파악.
- 도로 안내시설 설치 현황
 - (지주식) 설치된 안내판은 안내 용도에 따라 색상이 구분되어 있었으며, 도시의 미관을 고려하여 높지 않게 설치되어 있음.



[그림 3-10] 지주식 도로명판

- (벽면형) 설치된 안내판은 거리의 시작 및 끝 지점 건물에 설치되어 있으며, 약 2층정도 높이에 위치하고 있음.



[그림 3-11] 벽면형 도로명판

- 건물번호판은 도시의 미관을 고려하여 건물과 잘 어울리는 형태로 자유롭게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음.



[그림 3-12] 다양한 형태의 건물번호판

- 주소 체계에 있어서 건물번호 사이에 신규 번호를 부여할 경우 숫자와 알파벳을 결합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함.



[그림 3-13] 건물번호 사이에 신규로 부여한 건물번호

2) 마드리드

- 스페인의 수도인 마드리드의 신시가지와 구시가지(마요르거리와 산미구엘 전통시장, 구시가지인 톨레도)에 설치된 도로안내시설 및 건물에 설치된 건물번호판의 현황 파악.
- 도로 안내시설 설치 현황
 - (지주식) 설치된 안내판은 안내 용도에 따라 색상이 구분되어 있었으며, 도시의 미관을 고려하여 높지 않게 설치되어 있음.



[그림 3-14] 지주식 도로명판

- (벽면형) 설치된 안내판은 거리의 시작 및 끝 지점 건물에 설치되어 있으며, 약 2층정도 높이에 위치하고 있음.



[그림 3-15] 벽면형 도로판

- 건물번호판은 도시의 미관을 고려하여 건물과 잘 어울리는 형태로 자유롭게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음.



[그림 3-16] 건물 번호판

4. 이탈리아

1) 피렌체

- 이탈리아 피렌체의 시뇨리아 광장 및 시청 근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현황 파악.
- 도로 안내시설 설치 현황
 - (벽면형) 도로명을 안내하는 벽면형 도로안내표지판은 건물벽면의 2층 높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그림 3-17] 벽면형 도로명판



[그림 3-18] 변경 전 후 도로명 병행 표시 벽면형 도로명판

- (벽면형) 도로안내표지판은 변경 전 도로명을 병행하여 표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



[그림 3-19] 건물번호판

- (건물형) 건물번호판은 도시의 미관을 고려하여 건물과 잘 어울리는 형태로 자유롭게 설치되어 있었음.

2) 로마

- 로마(나보나 광장, 바티칸 시국 등 시내 중심지역)의 도로에 설치된 도로 안내시설 및 건물에 설치된 건물번호판 현황과 그밖의 안내시설현황 파악.
- 도로 안내시설 설치 현황
 - (지주식) 도로명을 안내하는 지주식 도로안내표지판은 건물벽면의 2층 높이에 설치되어 있으며, 일관된 형태를 가지고 있었음.



[그림 3-20] 지주식 도로명판

- (건물번호판) 건물번호판 역시 지주식 안내판과 동일하게 획일화 된 형태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그림 3-21] 건물번호판

5. 호주

- 호주 시드니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현황 파악.
- 도로 안내시설 설치 현황
 - (차량용) 설치된 안내판은 도로명을 우선 표시하고 지역명 등을 추가로 안내하고 있음.



[그림 3-22] 차량용 도로명판 설치사례

- (보행자용) 대부분 교차로나 도로 시·종점에 보행자 이동 방향에 따라 설치, 도로명판 하단에 기초번호를 안내하고 있음.



[그림 3-23]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사례

- 단독 거주 건물의 안내시설 설치
 - 출입구를 기준으로 시인성이 좋은 장소에 부착
 - 크기, 재질, 디자인 등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부착



[그림 3-24] 거주용 건물의 건물번호판 설치사례

○ 아파트 등 공동거주 건물의 건물번호판 설치

- (상세주소 사용) 개별 건물 건물번호를 부착하고 상세주소 안내판을 호수별 출입구마다 개별 부착하거나, 우편함을 설치하여 안내함.



[그림 3-25] 공동거주 건물 상세주소 사용 건물번호판 설치사례

- (호수별 건물번호 부여) 개별 호수마다 건물번호를 별도 부여하고 공동 출입구에 표기함.



[그림 3-26] 호수별 건물번호를 부여받은 건물의 건물번호판 설치사례

○ 도로명 중심 관광표지판

- 주요 관광지 안내지도 등은 도로명 중심으로 설치



[그림 3-27] 지역별 관광안내판 설치 사례

6. 뉴질랜드

- 뉴질랜드의 퀸스타운, 크라이스트처치, 웰링턴, 오클랜드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 설치 현황 파악.
- 도로 안내시설 설치
 - (차량용) 설치된 안내판은 도로명을 우선 표시하고 지역명 등을 추가로 안내함.



[그림 3-28] 차량용 도로명판 설치사례

- (보행자용) 대부분 교차로나 도로 시·종점에 보행자 이동 방향에 따라 설치, 도로명판 하단에 기초번호를 안내함.



[그림 3-29]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사례

- (벽면형) 도시 전체에 벽면형 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가 많음.



[그림 3-30] 벽면형 도로명판 설치사례

○ 개별 건물의 안내시설 설치

- 출입구를 기준으로 시인성이 좋은 장소에 부착.
- 크기, 재질, 디자인 등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부착.
- 주택의 경우 우편함을 이용한 건물번호 안내판이 많음.



[그림 3-31] 거주용 건물의 건물번호판 설치사례

○ 아파트 등 공동거주 건물의 건물번호판 설치

- (상세주소 사용) 개별 우편함을 사용하여 호수별 주소를 안내함.



[그림 3-32] 공동거주 건물 상세주소 사용 건물번호판 설치사례

- (호수별 건물번호 부여) 개별 호수마다 건물번호를 별도 부여하고 공동 출입구에 표기함.



[그림 3-33] 호수별 건물번호를 부여받은 건물의 건물번호판 설치사례

○ 같은 기초구간 내 건물의 건물번호 안내



[그림 3-34] 가지번호 건물의 건물번호판 설치사례

제4절 시사점

- 우리나라의 국가지점번호 체계와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는 영국, 프랑스의 격자체계 설정 및 운영 방법은 각 기관에서 공공분야 활용에 적합하도록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에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음.
- 주소 체계와 우편번호 설정 등을 위치정보 파악이 가능하도록 구축하여 관리 시스템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함.
- 도로의 방향성을 고려한 도로명판의 설치로 도로안내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함.
- 고속도로, 국도 등을 안내하는 시설물이 색깔 및 번호 등으로 구분하여 안내 및 관리의 효율성을 확대해야 함.
- 고속도로에 일정간격으로 비상전화를 설치하고, 위치를 알 수 있는 주소 체계를 마련하여 위급상황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야 함.
- 건물주소를 나타내는 번호를 자율적으로 설치 및 표시하게 하여 주소사용의 의지 및 당위성을 인지할 수 있게 해야 함.
- 가로등에 건물의 번호 또는 일련번호를 표시하여 부가적으로 위치를 알릴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산림지역, 하천 등 자연지역에 블록을 지정하여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에 대한 보호·관리시스템으로의 활용방안을 제공해야 함.
- 도로명판에 구역번호를 포함하여 표시함으로써 현재 위치한 구역을 가름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해야 함.
- 오래전부터 위치표시체계를 확고히 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에서는 공공·민간부문에서 시민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위치정보를 알리고 있으며 공공과 민간에서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활용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도 관계기관간 위치표시 시설물을 지점번호로 일원화하여

기관 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기반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민간부분 자료제공 확대 및 활용도 제고 등을 통해 보다 발전된 지점번호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 스페인, 이탈리아 주소체계 운영방법의 경우 각 기관에서 전문부서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 가능하도록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도로명 부여 및 변경 시 위원회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참고하여 정부가 결정·관리 주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도로명 부여의 경우 고대부터 이어져 오는 도로명을 기반으로 하여 역사적인 사실, 인물 및 강, 특수거리와 같은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도로명을 부여하고 있으며 도로명을 변경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도로 안내시설물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안내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 개수가 현저히 적었지만 보행자용 도로명판과 건물에 부착된 도로명판을 이용하여 길찾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음.
 - 건물번호 부여의 경우 일반 건물 및 대규모 건물 또는 아파트의 경우에도 건물군에 대한 개념을 적용하지 않고 건물에 존재하는 출입구 각각에 건물번호를 부여 하여 관리하는 특징이 있음.
 - 건물번호판의 경우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변화가 어려운 로마를 제외하고는 도시미관과 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자유로운 디자인을 채용하고 있으며, 건물 구조를 쉽게 바꾸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듯 건물 벽에 새겨진 건물번호도 존재 함.
 - 도로명주소 안내도의 경우 시청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도로명주소에 대한 자료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속성 및 도형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 있음. 인터넷 인프라 구축 상황이 우리나라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이 있음.
- 호주 및 뉴질랜드는 구간이 짧은 도로라도 개별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을 부여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위치확인 및 주소표기가 어려운 중

속구간에 새로이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도로명을 부여할 때에는 도로명이 중복되거나 발음이 어려운 단어등은 사용을 지양하고, 행정구역 단위로 중복되는 도로명을 사용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도로표지판은 도로명을 중심으로 표기하여 경로 찾기가 편리해야 함. 이를 위해 신규로 설치하는 도로표지판은 도로명 중심으로 설치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 됨.
- 선진국의 경우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을 도로구간의 시작점과 종점, 교차로뿐만 아니라 건물 벽면 등을 활용해 설치하여 보행자에게 현재 위치를 안내하고 있음. 이러한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모든 도로구간에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확대,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호주, 뉴질랜드의 도로안내시설은 도시미관 및 건물과 조화가 잘 되도록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디자인하여 설치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세금의 감면이나 인·허가 간소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건물 외부에 상세주소를 안내하는 안내판을 부착하여 건물의 전체 호수 현황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세종시 도로명주소이용 현황분석

제1절 세종시 도로명주소개선관련 정책

제2절 세종시 설문조사 분석

제3절 설문분석 시사점 및 결과비교

4장

제4장 세종시 도로명주소이용 현황분석

제1절 세종시 도로명주소개선관련 정책

1. 세종시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 2017년 12월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http://www.juso.go.kr>)에서 제공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명주소는 총 998개이며, ‘대로’ 3개(0.3%), ‘로’ 199개(19.94%), ‘길’ 796개(79.76%)로 분류하고 있음.
- 도로명주소 데이터베이스는 엑셀 형태의 데이터 뿐만 아니라 이미지 형태의 안내도로도 제공하고 있으며, 안내도 역시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함.
-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도로명주소명은 아래 표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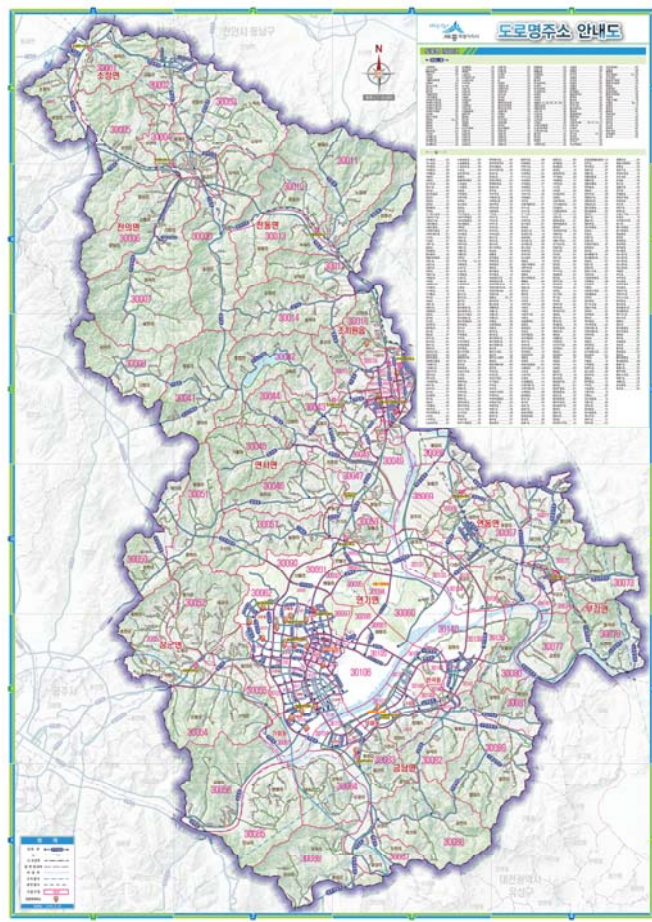
[표 4-1] 세종시 도로명주소 리스트

번호	도로명	번호	도로명	번호	도로명	번호	도로명	번호	도로명
1	시정대로	2	한누리대로	3	행복대로	4	가름로	5	가송로
6	가톨릭대학로	7	갈매로	8	갈산산수로	9	공단로	10	구룡달전로
11	구죽세종로	12	국립박물관로	13	국세청로	14	국책연구원로	15	국책연구원1로
16	국책연구원2로	17	국책연구원3로	18	국책연구원4로	19	군청로	20	금남구죽로
21	금벽로	22	금평로	23	금송로	24	금이로	25	김치선로
26	나리로	27	나리1로	28	나성남로	29	나성동로	30	나성로
31	나성북로	32	나성북1로	33	나성중앙로	34	나성중앙1로	35	나성중앙2로
36	나성중앙3로	37	나성중앙4로	38	남세종로	39	남세종1로	40	남세종2로
41	남세종3로	42	남세종4로	43	내창천로	44	내판로	45	노을1로
46	노을3로	47	노효등곡로	48	노효등곡1로	49	누리로	50	누리1로
51	다솜로	52	다솜1로	53	다솜2로	54	다솜3로	55	다정남로
56	다정동로	57	다정로	58	다정북로	59	다정서로	60	다정중앙로
61	달빛로	62	달빛1로	63	달빛2로	64	당산로	65	당진영덕고속도로
66	대청로	67	대평로	68	도신교북로	69	도움1로	70	도움2로
71	도움3로	72	도움4로	73	도움5로	74	도움6로	75	도움7로
76	도움8로	77	도원로	78	도원1로	79	도원2로	80	라온로
81	마음로	82	마음안로	83	마음안1로	84	마음안2로	85	만남로
86	만남1로	87	만남1북로	88	매실로	89	명학산단남로	90	명학산단동로
91	명학산단로	92	명학산단1로	93	명학산단서로	94	모롱지로	95	문화로
96	미리내로	97	바람재로	98	반곡로	99	반포세종로	100	보듬1로
101	보듬2로	102	보듬3로	103	보듬4로	104	보듬5로	105	보듬6로

번호	도로명	번호	도로명	번호	도로명	번호	도로명	번호	도로명
106	보듬7로	107	보듬8로	108	보람동로	109	보람로	110	보람서로
111	봉산로	112	부강금호로	113	부강로	114	부강외천로	115	부강행산로
116	비암로	117	새내로	118	새롭남로	119	새롭다정로	120	새롭동로
121	새롬로	122	새롬북로	123	새롬서로	124	새롬중앙로	125	새롬중앙1로
126	서부로	127	세종로	128	세종오송로	129	세종첨주로	130	세종평택로
131	소담로	132	소담1로	133	소담2로	134	소담3로	135	소담4로
136	소정산단동로	137	소정산단로	138	소정산단1로	139	소정산단2로	140	소정산단북로
141	소정산단서로	142	솔터로	143	송곡로	144	송암로	145	수왕로
146	시목부강로	147	신송로	148	삼동로	149	안금로	150	어울누리광장로
151	어울로	152	연서로	153	연청로	154	오봉로	155	와룡로
156	왕의물로	157	용연로	158	용포로	159	용포서로	160	운주산로
161	원수산로	162	월산공단로	163	월성로	164	월하천로	165	의당전의로
166	이화로	167	이화1로	168	임난수로	169	장기로	170	장안로
171	장육진로	172	장척로	173	자산척북로	174	자산태성로	175	전동로
176	절재로	177	정부2정사로	178	정안세종로	179	조치원로	180	종합경기장로
181	종합터미널로	182	죽림로	183	죽림본로	184	중앙공원로	185	중앙공원서로
186	중앙수목원로	187	집현로	188	차령고개로	189	차령로	190	청연로
191	충현로	192	취금현로	193	침산로	194	태산로	195	퇴미로
196	평안로	197	하나로	198	한솔동로	199	함박로	200	허만석로
201	효려울로	202	효교로	203	가나물길	204	가느실길	205	가동길
206	가마골길	207	가재골길	208	가재울길	209	각골길	210	간말길
211	갈거리길	212	갈산길	213	갈산1길	214	갈산웃골길	215	갈운1길
216	갈운2길	217	감성길	218	강당길	219	강변길	220	강정말길
221	거제길	222	건강길	223	건강1길	224	건너말고살길	225	고등삼기길
226	고등삼기1길	227	고등새뜸길	228	고등성제길	229	고등안골길	230	고북동막골길
231	고북오봉산길	232	고산길	233	고성길	234	고운1길	235	고운뜰1길
236	고운뜰2길	237	고운뜰3길	238	고운뜰4길	239	고운뜰5길	240	고운뜰6길
241	고운뜰7길	242	고운뜰8길	243	고운북1길	244	고운북2길	245	고운북3길
246	고운북4길	247	고운북5길	248	고운북6길	249	고운북7길	250	고운북8길
251	고운북9길	252	고운북10길	253	고운서길	254	고운서1길	255	고운서2길
256	고운서3길	257	고운서4길	258	골말길	259	관정골길	260	광명길
261	광산골길	262	광중새터말길	263	교촌길	264	교촌1길	265	교촌2길
266	교촌3길	267	구들기길	268	구령말길	269	구례길	270	구름들이길
271	구리골길	272	구서원길	273	구석뜸길	274	국곡길	275	국실길
276	국촌1길	277	국촌2길	278	군량골길	279	군량길	280	궁리길
281	근성길	282	금강변길	283	금반형길	284	금사길	285	금암길
286	금지1길	287	금지2길	288	금천1길	289	금천2길	290	금호검시길
291	금호선말길	292	금호안골길	293	금호황성골길	294	기외말1길	295	기외말2길
296	깊은내길	297	깊은내1길	298	꼭두네길	299	나무정어길	300	남곡1길
301	남곡2길	302	남산길	303	남성골길	304	내서길	305	내송길
306	내창1길	307	내창2길	308	내창3길	309	너먼들길	310	넉바위길
311	넉바위백호길	312	노곡길	313	노리미길	314	노송강당길	315	노송총담길
316	노송옹골길	317	노장공단길	318	노호길	319	높은정어길	320	놀왕길
321	놀왕새터말길	322	느리골길	323	느리울길	324	능골길	325	다락동길
326	다막골길	327	다막골1길	328	다막골2길	329	다운내길	330	다정1길
331	다정2길	332	다정3길	333	다정4길	334	다정5길	335	다정6길
336	다정7길	337	다정8길	338	다정9길	339	답제길	340	당산말길
341	당암길	342	대교길	343	대교뒀골길	344	대교야벳말길	345	대교양달뜸길
346	대교절골길	347	대동학교길	348	대박길	349	대박안길	350	대사동길
351	대실1길	352	대실2길	353	대추리길	354	대평1길	355	대평2길
356	대평3길	357	대평4길	358	대평시장1길	359	대평시장2길	360	대학길
361	덕고개길	362	덕고개길	363	덕용골길	364	도남1길	365	도남2길
366	도담길	367	도담1길	368	도담서길	369	도담서1길	370	도담서2길
371	도담서3길	372	도담서4길	373	도담서5길	374	도래말길	375	도암1길
376	도암2길	377	도암영곡길	378	도장말길	379	도장길	380	돈지길
381	돌간길	382	돌간1길	383	돌간2길	384	돌마루길	385	돌마루1길
386	돌마루2길	387	돌마루3길	388	돌마루4길	389	돌마루5길	390	돌마루6길
391	돌마루7길	392	동고길	393	동교동촌1길	394	동교동촌2길	395	동교산수골길
396	동교샘골1길	397	동교뒀샘골길	398	동막골길	399	동막골길	400	동신길
401	두루봉길	402	두만길	403	두만산동길	404	둔대밤절길	405	둔덕골길
406	둥구리재길	407	뒀골길	408	뒀고랑길	409	들말양지길	410	등곡길
411	등곡1길	412	뜸복골길	413	머실신산길	414	만남로1길	415	만남로2길

번호	도로명	번호	도로명	번호	도로명	번호	도로명	번호	도로명
416	만남로3길	417	만남로4길	418	만남로5길	419	만남로6길	420	만남로8길
421	만세길	422	망골길	423	매바위길	424	맹골1길	425	맹골2길
426	머지미길	427	명학1길	428	명학2길	429	명학남촌길	430	명학서촌길
431	모과나무길	432	모과나무1길	433	모과나무2길	434	모과나무3길	435	모산고개길
436	모시터길	437	몹티길	438	무녕이길	439	문곡구절골길	440	문곡담미길
441	문곡대국터길	442	문곡새뜸길	443	문곡자창이길	444	문성1길	445	문성2길
446	문암신촌길	447	문예회관길	448	문절사길	449	문주길	450	문화길
451	문화1길	452	문화2길	453	문화3길	454	문화4길	455	문화5길
456	문화6길	457	문화7길	458	미꾸지길	459	미륵당1길	460	미륵당2길
461	밀마루길	462	바른1길	463	바른2길	464	바른3길	465	바른4길
466	바른5길	467	바른6길	468	바른7길	469	바른8길	470	바위내길
471	바탕골길	472	바탕길	473	박산1길	474	박산2길	475	반곡1길
476	반곡2길	477	반곡3길	478	반곡남길	479	발산1길	480	발산2길
481	발산3길	482	밤나무골길	483	밤실길	484	방돌길	485	방머리1길
486	방앗골길	487	방죽안길	488	방죽골길	489	방축1길	490	방축2길
491	배수장길	492	배일길	493	백관길	494	백관1길	495	뱅이골길
496	버덕골길	497	변암공단1길	498	변암공단2길	499	변암안동네길	500	변암안동네1길
501	변암안동네2길	502	변암터길	503	변영1길	504	변영2길	505	별말길
506	별말길	507	범지기길	508	범허리길	509	별신당길	510	병풍정길
511	보람길	512	보람1길	513	보람2길	514	보람3길	515	보통1길
516	보통2길	517	보통3길	518	보평길	519	보평윗말길	520	복골길
521	봉대1길	522	봉대2길	523	봉산윗말1길	524	봉산윗말2길	525	봉산윗말3길
526	봉신길	527	봉안고개길	528	봉안길	529	봉안산소골길	530	봉암길
531	봉암새동네길	532	불천길	533	부강1길	534	부강2길	535	부강3길
536	부강4길	537	부강5길	538	부강신대길	539	부거실길	540	부곡길
541	부곡길	542	부동산수골길	543	부래미길	544	부래미앞골길	545	부용남이길
546	부촌길	547	복암천길	548	복촌1길	549	복촌2길	550	불곡길
551	불곡1길	552	불당골길	553	붉은덕길	554	비로봉길	555	비암사길
556	비학실길	557	사관정길	558	사기소길	559	사냥골길	560	사덕골길
561	사방골길	562	사시리길	563	사이수길	564	사장골길	565	산단길
566	산림박물관길	567	산막길	568	산막1길	569	산막2길	570	산막3길
571	산막4길	572	산막5길	573	산수길	574	산수1길	575	산수2길
576	산수3길	577	산책길	578	산책1길	579	산책2길	580	산학리길
581	살구정길	582	삼성길	583	삼성당1길	584	삼성당2길	585	삼송정길
586	상교동1길	587	상교동2길	588	상노장길	589	상대부길	590	상리1길
591	상리2길	592	상서곡길	593	상소골길	594	상안길	595	새내1길
596	새내2길	597	새내4길	598	새내5길	599	새내6길	600	새내7길
601	새내8길	602	새내9길	603	새내10길	604	새내11길	605	새내12길
606	새내13길	607	새내14길	608	새내15길	609	새내16길	610	새내17길
611	새내18길	612	새내19길	613	새내20길	614	새내21길	615	새내22길
616	새동네윗골길	617	새말길	618	새말다북동길	619	새주막1길	620	새주막2길
621	새주막3길	622	새주막4길	623	새터말길	624	샘골길	625	샘너머원당길
626	샘재길	627	생송1길	628	생송2길	629	생이길	630	생천길
631	서고길	632	서부길	633	서부안길	634	서원길	635	서정길
636	서창맞가길	637	서창안길	638	서태길	639	석교길	640	섬골골목길
641	섬골길	642	섬장골길	643	섬장길	644	성곡새말길	645	성곡잣말길
646	성덕1길	647	성덕2길	648	성덕도암길	649	성덕동길	650	성덕영곡길
651	성동길	652	성재길	653	성제서당골길	654	소룡골길	655	소룡골길
656	소미길	657	소정구길	658	소정길	659	소정샘골길	660	소정안골1길
661	소정안골2길	662	소죽골길	663	솔번들길	664	송곡1길	665	송마길
666	송문1길	667	송문2길	668	송문성재길	669	송문송정길	670	송성길
671	송용1길	672	송용2길	673	송적골길	674	송정골길	675	송정길
676	송정새터길	677	수구동길	678	수랑골길	679	수문강길	680	수산길
681	수원지길	682	수원지1길	683	수원지2길	684	수원지3길	685	수회길
686	시장길	687	시창1길	688	시창남길	689	신대송정길	690	신림길
691	신방새터길	692	신안새동네길	693	신안새동네1길	694	신안새동네2길	695	신암골길
696	신정윤담말길	697	신촌1길	698	신촌2길	699	신흥고살길	700	신흥고살1길
701	신흥사길	702	신흥새터길	703	신흥새터1길	704	신흥새터2길	705	신흥새터3길
706	신흥새터4길	707	쌍류송암길	708	쌍류예술촌길	709	쌍전길	710	아래깊은내길
711	아름남길	712	아름남1길	713	아름남2길	714	아름남3길	715	아름남4길
716	아름서길	717	아름서1길	718	아사더길	719	아야목길	720	아홉거리길
721	안기강산길	722	안동네길	723	안모산길	724	안산길	725	안터길

번호	도로명	번호	도로명	번호	도로명	번호	도로명	번호	도로명
726	안터1길	727	암천길	728	암실길	729	약수사길	730	양달말길
731	양대길	732	양안이길	733	양지편길	734	어울로1길	735	어울로2길
736	어울로3길	737	어울로4길	738	어진남길	739	어천길	740	언고개길
741	연기길	742	연지길	743	연화사길	744	열녀리길	745	영곡양지길
746	영곡양지1길	747	영골길	748	영대1길	749	영대2길	750	영성들길
751	영치안골길	752	영평사길	753	예양길	754	오구미1길	755	오구미2길
756	오구미3길	757	오대길	758	오룡동길	759	오류골길	760	오얏고지길
761	오얏골길	762	옹달길	763	외숫골길	764	외암길	765	외왕길
766	요곡길	767	요골길	768	용담길	769	용두미길	770	용산대길
771	용수천길	772	용암금단길	773	용암길	774	용암우출길	775	용암평촌길
776	용포1길	777	용포2길	778	용포노티나무길	779	용포동촌길	780	용포속터1길
781	용포속터2길	782	용포외곽길	783	용포이암길	784	용포중앙1길	785	용포중앙2길
786	용현길	787	용호1길	788	용호2길	789	운당길	790	운당당너머길
791	운당양촌불광골길	792	운주길	793	원덕골길	794	원마루길	795	원봉1길
796	원봉2길	797	원봉새말길	798	원봉안길	799	원봉오룡길	800	원부용길
801	원왕길	802	원직이길	803	원함강1길	804	원함강2길	805	원함강3길
806	월산새뜸길	807	월산황골길	808	월정길	809	월하1길	810	월하2길
811	월현윗길	812	윗다락골길	813	으뜸길	814	은동길	815	은암길
816	은용1길	817	은용2길	818	은용양지말길	819	은향나무길	820	읍담말길
821	은내길	822	읍내황골1길	823	읍내황골2길	824	읍담길	825	읍양1길
826	읍암2길	827	읍안노곡길	828	의넌어길	829	의당방축골길	830	이목동길
831	이적골길	832	자룡길	833	작은창고개길	834	작은황골길	835	жат미길
836	장군배길	837	장기초교길	838	장등고개길	839	장등길	840	장안길
841	장안1길	842	장안2길	843	장재길	844	장전말길	845	장터길
846	재지골길	847	저산궁현길	848	저산길	849	전원마을1길	850	전원마을2길
851	전의역길	852	정계길	853	정동길	854	정자동길	855	정자동길
856	조쟁이길	857	조치원1길	858	조치원2길	859	조치원3길	860	조치원4길
861	조치원5길	862	조치원6길	863	조치원7길	864	조치원8길	865	조치원9길
866	조치원10길	867	조치원11길	868	조치원12길	869	조치원중고길	870	종성골길
871	주곡길	872	주름길	873	주막거리길	874	주막뜸길	875	죽엽이길
876	중노장길	877	중대부길	878	중뜸길	879	증계말길	880	증판길
881	지곡길	882	지심골길	883	지춘이길	884	진동길	885	집현1길
886	집현2길	887	참새골길	888	참서령골길	889	채나무길	890	청라1길
891	청라2길	892	청룡안길	893	청송서당골길	894	청용길	895	청운가길
896	초당바위길	897	초오개길	898	초정길	899	축산길	900	충령고살길
901	칠불산길	902	침산1길	903	침산2길	904	침산3길	905	침산4길
906	침산5길	907	침산6길	908	침산7길	909	침산8길	910	침산넋가길
911	침천길	912	큰넷길	913	큰밭길	914	큰말1길	915	큰말2길
916	큰말3길	917	큰샘길	918	큰절골길	919	큰창고개길	920	탁금정길
921	태산길	922	태산길	923	태천1길	924	태천2길	925	터미널안길
926	토골고개길	927	토골길	928	파인빌리지길	929	평기길	930	평기산양길
931	평기큰골길	932	평장골길	933	평전길	934	평전말길	935	풍경재길
936	풍덕골길	937	하나물길	938	하노장1길	939	하노장2길	940	하노장3길
941	하노장4길	942	하노장5길	943	하봉금수동길	944	하봉길	945	하봉황골길
946	하산길	947	하석골길	948	하소골길	949	하주막골길	950	학교말길
951	학당이1길	952	학당이2길	953	학수소사길	954	한술1길	955	한술2길
956	한양궁길	957	할미터길	958	함강황금길	959	함강황금1길	960	해누리길
961	해누리1길	962	행골길	963	행복길	964	행복1길	965	행복2길
966	행복3길	967	행복4길	968	행복5길	969	행복6길	970	행복7길
971	행복8길	972	행복9길	973	행복10길	974	행복11길	975	행복12길
976	행복13길	977	행산길	978	행산별말길	979	행산웃골길	980	행정길
981	향나무길	982	헌터길	983	호병골길	984	호수공원길	985	호턴길
986	홍의길	987	홍축골길	988	황미창말길	989	황새미길	990	황새울골길
991	황용1길	992	황용2길	993	황우재길	994	황토고개길	995	회동1길
996	회동2길	997	효교동길	998	효자길				



[그림 4-1] 도로명주소 안내도(세종특별자치시)

2. 세종시 도로명주소개선 정책

1) 동(洞) 명칭 등 반영으로 도로명 명칭 개선

□ 추진개요

- 추진배경 : 도로명이 기존 마을이름 등을 반영하지 않아 시민들이 주소나 길을 찾는데 매우 불편하다는 의견 제기(우체국, 택배, 통장 등 관계기관)
- 추진기간 : 2016. 1. ~ 12.

- 추진대상 : 명칭개선이 필요한 기존 도로명 및 신규개설 도로
- 주요내용 : 행정구역, 기관, 공공시설, 산업단지 등 명칭을 반영한 도로명으로 변경하거나 신규 부여

□ 추진내용

- 시민 의견수렴 및 위원회 심의를 통해 동(洞), 기관, 산업단지 등 명칭을 반영하여 도로명 부여 및 변경 확정
 - 총 67개 도로구간에 대해 도로명 신규 부여(44개) 및 변경(23개)
- 도로명 변경고시('16.7.28.) 및 안내시설 정비 및 확충(87개)

도로명 변경 고시	안내시설 확충
	

□ 추진성과

- 시민에게 친숙한 도로명으로 변경 및 부여로 위치찾기 편의성 도모

2) 종속구간에 별도 도로명 선도적 부여

□ 추진개요

- (추진배경) 건물번호 간소화 및 도로명주소 기능강화를 위해 종속구간 등 도로명이 없는 도로구간에 도로명 부여(전국 최초)
- (추진기간) 2017. 7. ~ 12.
- (추진대상) 종속구간 50m(읍·면 지역 500m) 이상 도로구간 및 도로명이 없는 도로구간(근거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4조)

□ 추진내용

- (1단계) 종속구간(2,895개) 정비 대상 발굴 및 기초조사
 - 종속구간(2,835개) 및 도로명을 부여하지 않은 도로구간(60개)을 대상으로 정비 추진
- (2단계) 종속구간 정비대상 확정 및 주소사용자 조사
 - 종속구간 정비 시급성 및 주소사용자의 동의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정비대상 결정
- (3단계) 종속구간의 주소사용자 동의 및 도로명 부여 절차 추진

□ 추진성과

- 시범사업으로 총 17개 도로명 부여(종속구간 2개, 도로명이 없는 도로구간 15개)
-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간소화 및 위치찾기 편리성 제고

□ 발전방안

- 도로명주소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종속구간 정비를 통해 종속구간 비율 축소 및 도로명 부여 확대 추진('18년)

3. 세종시 도로명주소 생활화 사례

-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문화탐방
 - 미래의 주소 사용자인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문화유적지를 탐방하며 도로명의 유래를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학생들은 현장에서 보고 들으며,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대첩로(연기대첩비 공원), 비암사길(비암사), 프란치스코 교황로(프란치스코 교황 방문 기념비), 왕의물로(전의초수)의 유래와 세종시의 역사, 전통문화를 이해하도록 함.

○ 도로명주소 불편 개선

- 관계기관 및 시민들의 의견 수렴 결과 보람동, 대평동, 아름동, 고운동 지역 등 총 17개 종속구간에 새로운 도로명을 부여하였으며, 세종호수공원 내 약 4km의 자전거 도로에 예비 도로명 ‘호수공원길’을 부여하여 길 찾기 및 긴급구조 등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여 도로명주소의 생활화를 위해 노력함.

○ 도로명 서포터즈 간담회

- 도로명주소 서포터즈 간담회는 도로명주소 서포터즈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도로명 서포터즈 운영계획 설명, 활동사례 발표, 애로사항 청취에 이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로명주소 교육도 실시하여, 도로명주소 홍보뿐만 아니라 생활화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

○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발간(2014)

- 세종시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새주소 ‘책자형 안내지도’와 ‘접지형 안내지도’를 발간하였으며, 안내지도는 세종시 전체의 도로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체육시설, 관광지, 문화재 등 문화생활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며, 조기정착 및 생활화를 위해 관공서와 마을회관에 무료로 배부.

○ 도로명주소 최우수 마을 지정

- 세종시는 도로명주소 시범마을로 지정된 5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기집 주소 쓰기, 필기시험, 교육 참여도 등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하봉1리 마을을 도로명주소 최우수 마을로 선정.

○ 도로명주소 퀴즈엽서 쓰기

- 세종시는 ‘지역사회’ 과목에서 도로명주소를 학습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 3,300여명을 대상으로 체험행사를 실시함. 학생들은 학교에서 나눠준 엽서에 내 집 도로명주소와 우편번호를 쓰고 퀴즈를 풀어 학교에 제출하거나 우체통에 넣고, 시는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하고, 참여율이 높은 학교에는 어린이 도서를 증정.

○ 도로명주소 홍보전시회

- 도로명주소 홍보전시회는 시청 방문객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도로명주소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도로명주소의 기본체계, 건물번호판,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국가지점번호판, 도로명 관광안내도 등 30여 점 전시를 통해 도로명주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실생활 속에서 올바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도로명주소 방문교육

- 이·통장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교육을 실시하여, 연서면을 시작으로 종촌동까지 총 5회에 걸쳐 100여명에게 도로명주소의 기본원리와 표기방법, 검색방법 등의 교육을 통해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및 조기 정착을 지향함.

제2절 세종시 설문조사 분석

1. 설문조사 개요 및 응답자 기본정보

□ 설문조사개요

조사기간	2017.9.11 ~ 9.22
조사대상	세종시 거주 만10대이상 550명 시민대상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로 시청, 읍면동주민센터 등 방문고객대상으로 대면조사
조사내용	도로명주소 인지도, 숙지도, 활용도, 만족도, 불편 및 개선사항 등 5개 분야 14개항목

□ 응답자 기본 정보

1) 성별

- 남자 255명, 여자 291명으로 여자가 조금 높은 참여도를 보였음.
(성별 미기입 4명 제외)

[표 4-2] 성별

구분	빈도	비율(%)	그래프
남자	255	46.7	<p>단위(%)</p> <p>■ 남자 ■ 여자</p>
여자	291	53.3	

2) 연령

- 응답자 연령은 10대 8명, 20대 83명, 30대 187명, 40대 116명, 50대 95명, 60대 60명으로 30대와 4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음.
(연령 미기입 1명 제외)

[표 4-3] 연령

구분	빈도	비율(%)	그래프
만 10대	8	1.5	<p>단위(%)</p>
만 20대	83	15.1	
만 30대	187	34.1	
만 40대	116	21.1	
만 50대	95	17.3	
만 60대	60	10.9	
이상			

3) 직업

○ 직업은 학생 35명, 공무원 112명, 농업인 33명, 자영업 53명, 가정주부 85명, 직장인 145명, 기타 87명으로 직장인과 공무원이 다수를 차지하였음.

[표 4-4] 직업

구분	빈도	비율(%)	그래프
학생	35	6.4	<p>단위(%)</p>
공무원	112	20.4	
농업인	33	6.0	
자영업	53	9.6	
가정주부	85	15.5	
직장인	145	26.4	
기타	87	15.8	

4) 거주기간

○ 거주기간은 6개월 이내 45명, 6개월 이상 1년 이내 51명, 1년 이상 3년 이내 140명, 3년 이상 5년 이내 88명, 5년 이상 224명으로 도로명주소를 도입한 2014년 이전부터 거주한 응답자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거주기간 미기입 2명 제외)

[표 4-5] 세종특별자치시 거주기간

구분	빈도	비율(%)	그래프
6개월 이내	45	8.2	
6개월 이상 1년 이내	51	9.3	
1년 이상 3년 이내	140	25.5	
3년 이상 5년 이내	88	16.1	
5년 이상	224	4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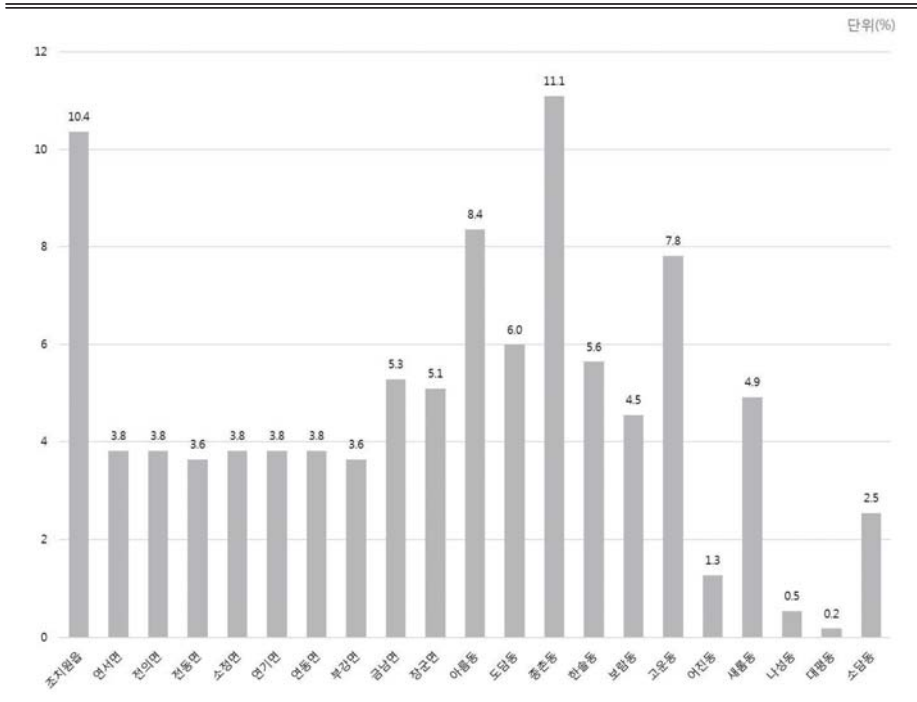
5) 거주지

- 거주지는 종촌동 61명, 조치원읍 57명, 아람동 46명, 고운동 43명, 도담동 33명, 한솔동 31명, 금남면 29명, 장군면 28명, 새롬동 27명, 보람동 25명, 연서면 21명, 전의면 21명, 소정면 21명, 연기면, 21명, 연동면 21명, 전동면 20명, 부강면 20명, 소담동 14명, 어진동 7명, 나성동 3명, 대평동 1명으로 동지역 291명, 읍면지역 259명이 설문에 응답하였음.

[표 4-6] 거주지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조치원읍	57	10.4	도담동	33	6.0
연서면	21	3.8	종촌동	61	11.1
전의면	21	3.8	한솔동	31	5.6
전동면	20	3.6	보람동	25	4.5
소정면	21	3.8	고운동	43	7.8
연기면	21	3.8	어진동	7	1.3
연동면	21	3.8	새롬동	27	4.9
부강면	20	3.6	나성동	3	0.5
금남면	29	5.3	대평동	1	0.2
장군면	28	5.1	소담동	14	2.5
아름동	46	8.4			

그래프



2. 도로명주소 인지도 및 숙지도 분석

1) 인지도

- 도로명주소 인지는 들어본 적이 있다 540명 98.2%, 들어본 적이 없다 10명 1.8%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도로명주소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7] 도로명주소 인지

구분	빈도	비율(%)	그래프
들어본 적이 있다	540	98.2	<p>단위(%)</p> <p>■ 있다 ■ 없다</p>
들어본 적이 없다	10	1.8	

- 성별로 보면, 남성은 250명으로 98.0%, 여성은 286명으로 98.3%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 도로명주소 인지 비율은 만 10대가 100.0%, 만 30대 98.9%, 만 40대 98.3%, 만 60대 98.3%, 만 20대 97.6%, 만 50대 96.8%순으로 나타남.
- 직업별로는 농업인 100.0%, 가정주부 100.0%, 공무원 98.2%, 자영업 98.1%, 기타 97.7%, 직장인 97.2%, 학생 97.1%로 나타남.
- 읍면 지역과 동 지역을 비교하면,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읍면 지역 255명, 동 지역 285명으로 모두 97.0% 이상으로 나타남.
- 거주기간별로는 6개월 이상 1년 이내가 1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년 이상 3년 이내 98.6%, 6개월 이내 97.8%, 5년 이상 97.8%, 3년 이상 5년 이내 97.7%로 나타남.

[표 4-8] 응답자 특성별 도로명주소 인지

항목	범주	빈도	비율(%)	그래프
성별	남	250	98.0	98.0
	여	286	98.3	98.3
연령	만 10대	8	100.0	100
	만 20대	81	97.6	97.6
	만 30대	185	98.9	98.9
	만 40대	114	98.3	98.3
	만 50대	92	96.8	96.8
	만 60대 이상	59	98.3	98.3
직업	학생	34	97.1	97.1
	공무원	110	98.2	98.2
	농업인	33	100.0	100.0
	자영업	52	98.1	98.1
	가정주부	85	100.0	100.0
	직장인	141	97.2	97.2
	기타	85	97.7	97.7
지역	읍면 지역	255	98.5	98.5
	동 지역	285	97.9	97.9
거주지	조치원읍	56	98.2	98.2
	연서면	21	100.0	100.0
	전의면	21	100.0	100.0
	전동면	20	100.0	100.0
	소정면	20	95.2	95.2
	연기면	21	100.0	100.0
	연동면	20	95.2	95.2
	부강면	20	100.0	100.0
	금남면	28	96.6	96.6
	장군면	28	100.0	100.0
	아름동	45	97.8	97.8
	도담동	32	97.0	97.0
	종촌동	61	100.0	100.0
	한솔동	31	100.0	100.0
	보람동	25	100.0	100.0
	고운동	42	97.7	97.7
	어진동	7	100.0	100.0
	새롬동	24	88.9	88.9
나성동	3	100.0	100.0	
대평동	1	100.0	100.0	
소담동	14	100.0	100.0	
거주기간	6개월 이내	44	97.8	97.8
	6개월 이상 1년 이내	51	100.0	100.0
	1년 이상 3년 이내	138	98.6	98.6
	3년 이상 5년 이내	86	97.7	97.7
	5년 이상	219	97.8	97.8

- 도로명주소 인지는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10명 1.8%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성 2.0%, 여성 1.7%로 나타남.
- 연령별로 만 50대 3.2%, 만 20대 2.4%, 만 40대 1.7%, 만 60대 1.7%, 만 30대 1.1%순으로 나타남.
- 직업별로 학생 2.9%, 직장인 2.8%, 기타 2.3%, 자영업 1.8%순으로 나타남.
- 행정구역별로 새롬동 11.1%, 소정면 4.8%, 연동면 4.8%, 금남면 3.4%, 도담동 3.0%, 고운동 2.3%, 아름동 2.2%, 조치원읍 1.8%순으로 나타남.
- 거주기간별로 3년이상 5년 이내 2.3%, 6개월 이상 2.2%, 5년이상 2.2%, 1년 이상 3년 이내 1.4%순으로 나타남.

2) 속지도

- 거주지 도로명주소 속지는 정확히 알고 있다 83.9%, 어렵פות이 생각나는 정도이다 14.1%, 모른다 2.0%으로 나타남.

[표 4-9] 거주지 도로명주소 속지

구분	빈도	비율(%)	그래프
정확히 알고 있다	453	83.9	
어렵פות이 생각나는 정도이다	76	14.1	
모른다	11	2.0	

- 성별 거주지 도로명주소 속지는 정확히 알고 있다는 응답이 남성 78.8%, 여성 88.8%에 달하여 여성이 대체로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 거주지 도로명주소 속지는 정확히 알고 있다는 응답이 만 40대 87.7%, 만 30대 87.0%, 만 50대 84.8%, 만 60대 이상 84.7%, 만 20대 72.8%, 만 10대 62.5%로 나타났는데, 만 1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음.
- 직업별 거주지 도로명주소 속지는 정확히 알고 있다는 응답이 공무원

94.5%, 농업인 90.9%, 가정주부 84.7%, 직장인 83.7%, 자영업 78.8%, 기타 77.6%, 학생 64.7%로 나타남.

- 읍면 지역과 동 지역을 비교하면, 정확히 알고 있다는 응답이 읍면 지역 81.6%, 동 지역이 86.0%, 어렴풋이 생각나는 정도이다는 각각 16.5%, 11.9%, 모른다는 2.0%, 2.1%로 나타남.
- 거주기간별 거주지 도로명주소 숙지는 정확히 알고 있다는 응답이 5년 이상 86.8%, 3년 이상 5년 이내 86.0%, 6개월 이상 1년 이내 84.3%, 1년 이상 3년 이내 82.6%, 6개월 이내 68.2%로 나타남.

[표 4-10] 응답자 특성별 거주지 도로명주소 숙지

항목	범주	빈도		비율(%)		그래프
		정확하게	어렵게	정확하게	어렵게	
성별	남	197	44	78.8	17.6	
	여	254	30	88.8	10.5	
연령	만 10대	5	3	62.5	37.5	
	만 20대	59	21	72.8	25.9	
	만 30대	161	22	87.0	11.9	
	만 40대	100	11	87.7	9.6	
	만 50대	78	13	84.8	14.1	
	만 60대 이상	50	5	84.7	8.5	
직업	학생	22	12	64.7	35.3	
	공무원	104	6	94.5	5.5	
	농업인	30	2	90.9	6.1	
	자영업	41	10	78.8	19.2	
	가정주부	72	12	84.7	14.1	
	직장인	118	20	83.7	14.2	
	기타	66	14	77.6	16.5	
지역	읍면 지역	208	42	81.6	16.5	
	동 지역	245	34	86.0	11.9	
거주지	조치원읍	46	9	82.1	16.1	
	연서면	15	5	71.4	23.8	
	전의면	18	3	85.7	14.3	
	전동면	17	3	85.0	15.0	
	소정면	16	4	80.0	20.0	
	연기면	14	5	66.7	23.8	
	연동면	20	0	100.0	0.0	
	부강면	16	4	80.0	20.0	
	금남면	26	2	92.9	7.1	
	장군면	20	7	71.4	25.0	
	아름동	37	8	82.2	17.8	
	도담동	28	3	87.5	9.4	
	종촌동	57	4	93.4	6.6	
	한솔동	30	1	96.8	3.2	
	보람동	18	5	72.0	20.0	
	고운동	37	5	88.1	11.9	
	여진동	7	0	100.0	0.0	
	새롬동	16	5	66.7	20.8	
	나성동	3	0	100.0	0.0	
	대평동	0	1	0.0	100.0	
소담동	12	2	85.7	14.3		
거주 기간	6개월 이내	30	12	68.2	27.3	
	6개월 이상 1년 이내	43	8	84.3	15.7	
	1년 이상 3년 이내	114	21	82.6	15.2	
	3년 이상 5년 이내	74	11	86.0	12.8	
	5년 이상	190	24	86.8	11.0	

3) 미숙지 원인

- 거주지 도로명주소를 정확히 외우지 못한 이유로는 동명칭(마을명칭)과 달라서가 3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도로명주소 정확한 체계를 몰라서 23.5%,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어서 20.0%, 도로명주소가 길어서 11.8%, 기타 9.4%순으로 나타남.
- 기타 의견은 외워지지 않아서, 지번주소를 사용해서, 아파트인 경우 마을과 동·호수만 알면 우편물 수령이 가능해서, 전입시기가 얼마 되지 않아서 등으로 나타남.

[표 4-11] 거주지 도로명주소 외우지 못한 이유

구분	빈도	비율(%)
도로명주소가 길어서	10	11.8
동명칭(마을명칭)과 달라서	30	35.3
도로명주소 정확한 체계를 몰라서	20	23.5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어서	17	20.0
기타	8	9.4

그래프



3. 도로명주소 활용도 분석

1) 도로명주소 활용경험 및 사용분야

- 도로명주소 사용경험은 사용해본 적이 있다 97.2%, 사용해본 적이 없다 2.8%로 도로명주소를 생활에서 사용한 경험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12] 도로명주소 활용

구분	빈도	비율(%)	그래프
사용해본 적이 있다	252	97.2	<p>단위(%)</p> <p>■ 있다 ■ 없다</p>
사용해본 적이 없다	15	2.8	

- 성별 도로명주소 사용경험은 사용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남성 95.6%, 여성 98.6%로 나타남.
- 연령별 도로명주소 활용은 사용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만 10대 100%, 만 40대 98.2%, 만 30대 97.8%, 만 50대 96.7%, 만 20대 96.3%, 만 60대 이상 94.9%로 나타남.
- 직업별로 도로명주소 활용은 사용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학생 100.0%, 자영업 100.0%, 공무원 99.1%, 가정주부 97.6%, 농업인 97.0%, 직장인 96.5%, 기타 92.9%로 나타남.
- 읍면 지역과 동 지역을 비교하면, 사용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읍면 지역 97.3%, 동 지역 97.2%로 모두 97.0%이상으로 나타남.
- 거주기간별로 도로명주소 활용은 사용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6개월 이상 1년 이내 100.0%, 3년 이상 5년 이내 98.8%, 5년 이상 97.7%, 6개월 이내 95.5%, 1년 이상 3년 이내 94.9%로 나타남.

[표 4-13] 응답자 특성별 도로명주소 활용

항목	범주	빈도	비율(%)	그래프
성별	남	239	95.6	95.6
	여	282	98.6	98.6
연령	만 10대	8	100.0	100.0
	만 20대	78	96.3	96.3
	만 30대	181	97.8	97.8
	만 40대	112	98.2	98.2
	만 50대	89	96.7	96.7
	만 60대 이상	56	94.9	94.9
직업	학생	34	100.0	100.0
	공무원	109	99.1	99.1
	농업인	32	97.0	97.0
	자영업	52	100.0	100.0
	가정주부	83	97.6	97.6
	직장인	136	96.5	96.5
	기타	79	92.9	92.9
지역	읍면 지역	248	97.3	97.3
	동 지역	277	97.2	97.2
거주지	조치원읍	55	98.2	98.2
	연서면	21	100.0	100.0
	전의면	19	90.5	90.5
	전동면	20	100.0	100.0
	소정면	19	95.5	95.5
	연기면	19	90.5	90.5
	연동면	19	95.0	95.0
	부강면	20	100.0	100.0
	금남면	28	100.0	100.0
	장군면	28	100.0	100.0
	아름동	42	93.3	93.3
	도담동	32	100.0	100.0
	종촌동	61	100.0	100.0
	한솔동	31	100.0	100.0
	보람동	25	100.0	100.0
	고운동	39	92.9	92.9
	어진동	7	100.0	100.0
	새롬동	23	95.8	95.8
	나성동	3	100.0	100.0
대평동	1	100.0	100.0	
소담동	13	92.9	92.9	
거주 기간	6개월 이내	42	95.5	95.5
	6개월 이상 1년 이내	51	100.0	100.0
	1년 이상 3년 이내	131	94.9	94.9
	3년 이상 5년 이내	85	98.8	98.8
	5년 이상	214	97.7	97.7

- 주로 사용하는 주소의 응답은 도로명주소가 67.9%, 상황에 따름(혼용)이 24.3%, 지번주소가 7.8%로 나타남.

[표 4-14] 주로 사용하는 주소

구분	빈도	비율(%)	그래프
도로명주소	355	67.9	<p>단위(%)</p> <p>도로명주소 67.9</p> <p>지번주소 7.8</p> <p>상황에 따라 다름 24.3</p> <p>0 10 20 30 40 50 60 70</p>
지번주소	41	7.8	
상황에 따라 다름(혼용)	127	24.3	

-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도로명주소의 사용 분야는 우편물이나 택배 보낼 때 24.9%, 전입신고·주민등록등본 발급 및 민원업무 볼 때 20.0%, 인터넷이나 홈쇼핑 등에서 물건을 살 때 15.0%, 운전시 내비게이션을 검색할 때 13.0%, 모임·단체·인터넷 등에서 회원 가입할 때 10.8%, 길을 찾거나 위치를 알려줄 때 9.2%, 음식 등을 배달 시킬 때 5.4%, 범죄, 화재,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시 1.3%, 기타 0.3%순으로 나타남.
- 기타 의견은 부동산 계약시, 학교에 주소를 적어 보낼 때 등으로 나타남.

[표 4-15] 도로명주소 사용 분야

구분	빈도	비율(%)
전입신고·주민등록등본 발급 등 민원업무 볼 때	289	20.2
우편물이나 택배 보낼 때	357	24.9
모임·단체·인터넷 등에서 회원 가입할 때	155	10.8
길을 찾거나 위치를 알려줄 때	132	9.2
운전시 내비게이션을 검색할 때	186	13.0
음식 등을 배달시킬 때	77	5.4
인터넷이나 홈쇼핑 등에서 물건을 살 때	215	15.0
범죄, 화재,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시	18	1.3
기타	4	0.3

그래프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사용 경험은 건물번호판 43.2%, 도로명판 35.0%, 기초번호판 5.9%, 지역안내판 4.0%, 활용 경험 없음 11.9%로 나타남.

[표 4-16]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활용 경험

구분	빈도	비율(%)	그래프												
도로명판	243	35.0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비율(%)</th> </tr> </thead> <tbody> <tr> <td>도로명판</td> <td>35.0</td> </tr> <tr> <td>건물번호판</td> <td>43.2</td> </tr> <tr> <td>지역안내판</td> <td>4.0</td> </tr> <tr> <td>기초번호판</td> <td>5.9</td> </tr> <tr> <td>활용 경험 없음</td> <td>11.9</td> </tr> </tbody> </table>	구분	비율(%)	도로명판	35.0	건물번호판	43.2	지역안내판	4.0	기초번호판	5.9	활용 경험 없음	11.9
구분	비율(%)														
도로명판	35.0														
건물번호판	43.2														
지역안내판	4.0														
기초번호판	5.9														
활용 경험 없음	11.9														
건물번호판	300	43.2													
지역안내판	28	4.0													
기초번호판	41	5.9													
활용 경험 없음	83	11.9													

2) 지번주소를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곳

-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고 지번주소를 주로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곳은 부동산 중개소가 2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내비게이션 길찾기 25.8%, 배달음식점 20.7%, 기타 10.2%, 택배 및 퀵서비스 8.5%, 온라인 쇼핑몰 7.1%순으로 나타남.
- 기타 의견은 건물이 없는 지역, 토지(논·밭) 등 정보, 모르겠음, 없음 등으로 나타남.

[표 4-17] 지번주소를 사용하는 곳

구분	빈도	비율(%)	그래프
배달음식점	105	20.7	<p>단위(%)</p>
부동산 중개소	141	27.8	
택배 및 퀵서비스	43	8.5	
내비게이션 길찾기	131	25.8	
온라인 쇼핑몰	36	7.1	
기타	52	10.2	

4. 도로명주소 만족도 분석

- 도로명주소 만족은 만족하는 편이다 38.5%, 보통이다 37.2%, 매우 만족한다 13.0%,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8.4%,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3.0%로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8] 도로명주소 만족

구분	빈도	비율(%)	그래프
매우 만족한다	70	13.0	<p>단위(%)</p>
만족하는 편이다	207	38.5	
보통이다	200	37.2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45	8.4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16	3.0	

- 만족(매우 만족한다, 만족하는 편이다), 보통, 불만족(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의 세단계로 나누어봤을 때, 응답자 특성별 도로명주소 만족도는 아래와 같음.
- 성별로 보면 만족은 남성 45.6%, 여성 57.4%가 보통은 남성 40.4%, 여성 34.2%, 불만족은 남성 14.0%, 여성 8.5%로 나타남.
- 연령별 만족은 만 10대 62.5%, 만 60대 이상 59.3%, 만 30대 54.1%, 만 50대 48.9%, 만 40대 48.2%, 만 20대 46.9%, 보통은 만 20대 42.0%, 만 40대 41.2%, 만 10대 37.5%, 만 30대 37.2%, 만 50대 33.7%, 만 60대 이상 28.8%으로 나타남.
- 직업별로 만족은 공무원 58.3%, 기타 55.3%, 자영업 51.9%, 농업인 51.5%, 학생 50.0%, 가정주부 48.2%, 직장인 46.1%로 나타남.
- 읍면 지역과 동 지역을 비교하면, 만족은 읍면 지역 48.2%, 동 지역 54.4%, 보통은 읍면 지역 38.8%, 동 지역 35.7%, 불만족은 읍면 지역 12.9%, 동 지역 9.9%로 나타남.
- 거주기간별로 만족은 6개월 이상 1년 이내 58.8%, 1년 이상 3년 이내 55.1%, 5년 이상 52.8%, 3년 이상 5년 이내 44.7%, 6개월 이내 38.6%로 나타남.

[표 4-19] 응답자 특성별 도로명주소 만족

항목	범주	빈도		비율(%)		그래프
		만족	보통	만족	보통	
성별	남	114	101	45.6	40.4	45.6 40.4
	여	163	97	57.4	34.2	57.4 34.2
연령	만 10대	5	3	62.5	37.5	62.5 37.5
	만 20대	38	34	46.9	42.0	46.9 42.0
	만 30대	99	68	54.1	37.2	54.1 37.2
	만 40대	55	47	48.2	41.2	48.2 41.2
	만 50대	45	31	48.9	33.7	48.9 33.7
	만 60대 이상	35	17	59.3	28.8	59.3 28.8
직업	학생	17	15	50.0	44.1	50.0 44.1
	공무원	63	36	58.3	33.3	58.3 33.3
	농업인	17	11	51.5	33.3	51.5 33.3
	자영업	27	14	51.9	26.9	51.9 26.9
	가정주부	41	32	48.2	37.6	48.2 37.6
	직장인	65	62	46.1	44.0	46.1 44.0
	기타	47	30	55.3	35.3	55.3 35.3
지역	읍면 지역	123	99	48.2	38.8	48.2 38.8
	동 지역	154	101	54.4	35.7	54.4 35.7
거주지	조치원읍	26	20	46.4	35.7	46.4 35.7
	연서면	9	4	42.9	19.0	42.9 19.0
	전의면	12	9	57.1	42.9	57.1 42.9
	전동면	14	4	70.0	20.0	70.0 20.0
	소정면	7	9	35.0	45.0	35.0 45.0
	연기면	5	14	23.8	66.7	23.8 66.7
	연동면	11	8	55.0	40.0	55.0 40.0
	부강면	11	7	55.0	35.0	55.0 35.0
	금남면	13	14	46.4	50.0	46.4 50.0
	장군면	15	10	53.6	35.7	53.6 35.7
	아름동	19	20	44.2	46.5	44.2 46.5
	도담동	22	7	68.8	21.9	68.8 21.9
	종촌동	36	20	59.0	32.8	59.0 32.8
	한솔동	18	9	58.1	29.0	58.1 29.0
	보람동	9	12	36.0	48.0	36.0 48.0
	고운동	26	14	61.9	33.3	61.9 33.3
	어진동	3	4	42.9	57.1	42.9 57.1
	새롭동	14	5	58.3	20.8	58.3 20.8
	나성동	0	3	0.0	100.0	100.0
대평동	0	1	0.0	100.0	100.0	
소담동	7	6	50.0	42.9	50.0 42.9	
거주기간	6개월 이내	17	20	38.6	45.5	38.6 45.5
	6개월 이상 1년 이내	30	19	58.8	37.3	58.8 37.3
	1년 이상 3년 이내	76	50	55.1	36.2	55.1 36.2
	3년 이상 5년 이내	38	31	44.7	36.5	44.7 36.5
	5년 이상	115	80	52.8	36.7	52.8 36.7

-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비교할 때 사용이 더 편리한 주소로는 도로명주소가 49.9%, 지번주소가 26.5%, 모르겠다가 23.6%로 나타남.

[표 4-20] 더 편리한 주소

구분	빈도	비율(%)	그래프
도로명주소	269	49.9	
지번주소	143	26.5	
모르겠다	127	23.6	

5. 도로명주소 불편 및 개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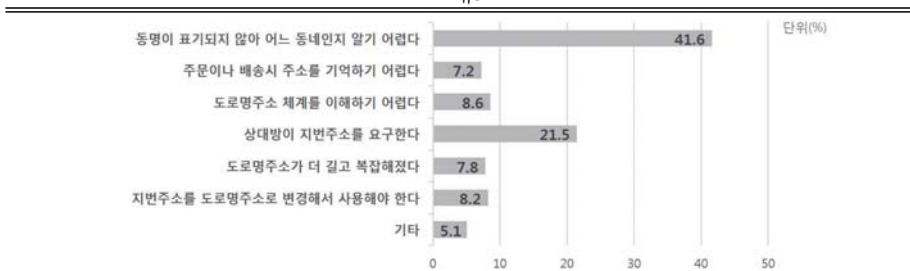
1) 도로명주소 불편사항

- 도로명주소가 불편한 사유는 동명(마을이름)이 표기되지 않아 어느 동네인지 알기 어렵다 4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방이 지번주소를 요구한다 21.5%, 도로명주소 체계를 이해하기 어렵다 8.6%,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해서 사용해야 한다 8.2%, 도로명주소가 더 길고 복잡해졌다 7.8%, 주문이나 배송시 주소를 기억하기 어렵다 7.2%, 기타 5.1%순으로 나타남.
- 기타 의견에는 법정동에 여러 개의 도로명이 사용되어 혼란스러움, 도로 없으면 도로명주소가 없음, 행정업무처리시 지번주소 기반이 아직 많음, 불편하지 않음 등으로 나타남.

[표 4-21] 도로명주소 불편한 점

구분	빈도	비율(%)
동명이 표기되지 않아 어느 동네인지 알기 어렵다	213	41.6
주문이나 배송시 주소를 기억하기 어렵다	37	7.2
도로명주소 체계를 이해하기 어렵다	44	8.6
상대방이 지번주소를 요구한다	110	21.5
도로명주소가 더 길고 복잡해졌다	40	7.8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해서 사용해야 한다	42	8.2
기타	26	5.1

그래프



○ 기타불편사항으로는 아파트 단지 표현이 어느 아파트 몇 단지 인지 분별이 어려움, 오프라인 사용 시 눈에 잘 띄지 않음, 기준을 몰라 도로명주소의 원리 이해가 안 됨, 명칭이 낯설, 토지 주소는 여전히 지번주소를 써야 해서 불편함 등이 있었고 도로명주소가 너무 길고 어려움, 예전 주소 이중 사용으로 헷갈림, 인터넷, 내비게이션에서 도로명주소로 검색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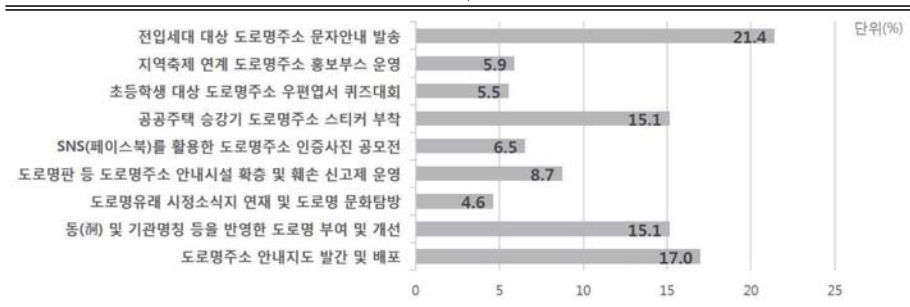
2) 도로명주소정착의 효과적인 시책

-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시책은 전입세대 대상 도로명주소 문자안내 발송 21.4%,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발간 및 배포 17.0%, 공공주택 승강기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 15.1%, 동(洞) 및 기관 명칭 등을 반영한 도로명 부여 및 개선 15.1%로 나타남.

[표 4-22] 도로명주소 정착에 효과적인 시책

구분	빈도	비율(%)
전입세대 대상 도로명주소 문자안내 발송	301	21.4
지역축제 연계 도로명주소 홍보부스 운영	83	5.9
초등학생 대상 도로명주소 우편엽서 퀴즈대회	78	5.5
공공주택 승강기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	213	15.1
SNS를 활용한 도로명주소 인증사진 공모전	92	6.5
도로명판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및 훼손 신고제 운영	123	8.7
도로명유래 시정소식지 연재 및 도로명 문화탐방	65	4.6
동(洞) 및 기관명칭 등을 반영한 도로명 부여 및 개선	213	15.1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발간 및 배포	239	17.0

그래프



3) 도로명주소 개선사항

- 도로명주소 개선사항은 외우기 어려운 도로명칭 개선, 길찾기 편리하게 도로명판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내비게이션, 인터넷 쇼핑몰 등 도로명주소 검색체계 개선, 도로명주소 사용 및 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강화순으로 나타남.
- 1순위로 외우기 어려운 도로명칭 개선 38.7%, 내비게이션, 인터넷 쇼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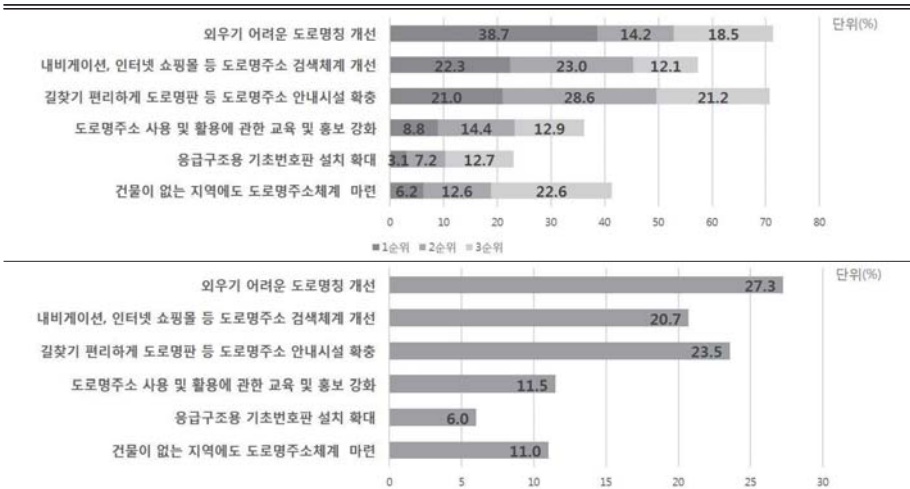
물 등 도로명주소 검색체계 개선 22.3%로 높게 나타남.

- 2순위로 길찾기 편리하게 도로명판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28.6%, 내비게이션, 인터넷 쇼핑몰 등 도로명주소 검색체계 개선 23.0%로 높게 나타남.
- 3순위로 건물이 없는 지역에도 도로명주소체계 마련 22.6%, 길찾기 편리하게 도로명판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21.2%로 높게 나타남.

[표 4-23] 도로명주소 개선사항

범주		빈도	비율(%)
1순위	외우기 어려운 도로명칭 개선	201	38.7
	내비게이션, 인터넷 쇼핑몰 등 도로명주소 검색체계 개선	116	22.3
	길찾기 편리하게 도로명판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109	21.0
범주		빈도	비율(%)
2순위	길찾기 편리하게 도로명판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143	28.6
	내비게이션, 인터넷 쇼핑몰 등 도로명주소 검색체계 개선	115	23.0
	도로명주소 사용 및 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72	14.4
범주		빈도	비율(%)
3순위	건물이 없는 지역에도 도로명주소체계 마련	112	22.6
	길찾기 편리하게 도로명판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105	21.2
	외우기 어려운 도로명칭 개선	92	18.5

그래프



- 기타 개선사항으로는 도로명주소의 편리성 홍보, 도로명주소 체계 이해를 통한 실질적 활용 필요성 인식 필요, 지역, 동 이름 특성 및 역사 고려한 명칭으로 개선 등이 있었고 인터넷, 내비게이션에 도로명주소 검색되도록 개선, 동지역 마을 등 도로명에 명칭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제3절 설문분석 시사점 및 결과비교

1. 설문분석 시사점

1) 인지도

- 도로명주소의 법정 의무화가 시행된 지 4년이 넘어, 도로명주소를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인지도는 높은 편으로 나타남.(98.2%)

2) 숙지도

- 응답자 거주지의 도로명주소 숙지는 정확히 알고 있다 83.9%, 어렵듯이 생각나는 정도이다 14.1%, 모른다 2.0%으로 나타남.
- 응답자별 특성으로 숙지도를 살펴보았을 때, 정확히 알고 있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특성들이 연령별에서는 만10대, 만20대의 젊은 층에서 숙지도가 낮았으며, 직업군에서는 학생, 거주지별로는 읍면지역이 동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거주기간은 6개월이내인 신규 전입자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따라서, 도로명주소의 숙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시,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세종시 토지정보과에서 시행한 ‘도로명주소 쓰기 및 퀴즈풀기’(2017.10.7~9, 세종시민 718명 대상)에서 ‘내집 도로명주소 쓰기’결과 분석결과에 따르면, 바른표기(70.9%), 약간미숙(25.5%), 모름(3.6%)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정확히 알고 있다(83.9%)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음. 이는 도로명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시민들 중에도 실제 도로명주소를 쓸 때 잘못 표기하는 시민들이 약 15.5%임을 의미하므로, 정확하게 숙지했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에게도 꾸준히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함.

3) 활용도

- 도로명주소를 한번이라도 사용해 본 경험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97.2%)
- 도로명주소 사용 분야는 우편물이나 택배 보낼 때, 전입신고·주민등록등본 발급 및 민원업무 볼 때 등 공공기관이나 의무적 사용이 필요한 곳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상 생활면에서는 지번주소와의 혼용이 가능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여짐.
- 주로 사용하는 주소의 응답은 도로명주소가 67.9%, 상황에 따름(혼용)이 24.3%, 지번주소가 7.8%로 나타났고, 지번주소의 사용률이 낮긴하나 상황에 따라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혼용하는 시민비율이 아직은 높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지번주소가 혼용가능한 상황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여야 함.
-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고 지번주소를 주로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곳은 부동산 중개소가 2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내비게이션 길찾기 25.8%, 배달음식점 20.7%순으로 나타남. (부동산 중개소의 경우에는 계약서 등에 도로명주소를 의무적으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손님들에게 ‘OO동 OO아파트’와 같이 위치를 설명할 때 법정동을 사용하여 시민들이 지번주소를 주로 사용한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판단됨.)

4) 만족도

- 2017년 처음 시행한 세종시 도로명주소 만족도 조사는 만족하다가 51.5%(매우 만족함 : 13.0%, 만족하는 편임 : 38.5%), 보통이 37.2%, 만족하지 않다가 11.4%(만족하지 않는편 : 8.4%, 매우 만족하지 않음 : 3.0%)으로 세종시민들은 도로명 주소를 만족하는 편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별 특성으로 보았을 때, 읍면지역이 동지역에 비해 만족도가 낮으므로, 읍면지역에 대한 만족도 향상이 필요함. 이는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환과정을 거친 읍면지역과, 도로명주소만 부여된 동지역의 차이

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으므로, 지역맞춤형 정책이 필요함.

-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비교할 때 사용이 더 편리한 주소로는 도로명주소가 49.9%, 지번주소가 26.5%, 모르겠다가 23.6%로 나타났으며, 지번주소가 더 편리하다고 응답한 시민들의 특성을 분석해보면, 아래 표에서 나타나듯이 남성, 만20대와 40대, 직장인, 읍면지역, 6개월이내 거주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도로명주소 불편사항 개선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맞춤형 정책이 효과적임.

[표 4-24] 지번주소 사용이 더 편리한 응답자 특성

항목	범주	빈도	비율(%)	그래프
성별	남	80	32.0	32.0
	여	60	21.1	21.1
연령	만 10대	2	25.0	25.0
	만 20대	24	29.6	29.6
	만 30대	45	24.3	24.3
	만 40대	36	31.6	31.6
	만 50대	23	25.3	25.3
	만 60대 이상	12	20.3	20.3
직업	학생	7	20.6	20.6
	공무원	23	20.9	20.9
	농업인	8	24.2	24.2
	자영업	15	28.8	28.8
	가정주부	20	23.8	23.8
	직장인	49	34.8	34.8
	기타	21	24.7	24.7
지역	읍면 지역	81	31.8	31.8
	동 지역	62	21.8	21.8
거주기간	6개월 이내	19	43.2	43.2
	6개월 이상 1년 이내	12	23.5	23.5
	1년 이상 3년 이내	26	18.8	18.8
	3년 이상 5년 이내	26	30.6	30.6
	5년 이상	59	26.9	26.9

5) 불편 및 개선사항

- 도로명주소에 불편한 사유는 동명(마을이름)이 표기되지 않아 어느 동네인지 알기 어렵다라는 응답과 상대방이 지번주소를 요구한다라는 응답비율이 높았으며, 도로명주소 체계에 대한 이해,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해서 사용 등의 의견이 있었음.

-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시책은 전입세대 대상 도로명주소 문자안내 발송,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발간 및 배포, 공공주택 승강기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 등의 순서로 홍보부문이 효과적이라고 시민들을 응답했고, 불편사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응답이 나온 동(洞) 및 기관명칭 등을 반영한 도로명 부여 및 개선시책은 홍보부문에 이어 효과적이라고 조사됨.
- 도로명주소 개선사항은 외우기 어려운 도로명칭 개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도로명주소 검색체계 개선, 도로명주소 사용 및 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순으로 나타남.
- 도로명주소의 생활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부문의 시책들은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외우기 어렵거나 지역특성이 미반영한 도로명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함. 단, 개선이나 변경시에는 확실한 원칙하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본질적으로는 도로명을 지역커뮤니티개념에서 공동체적 관점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함.

2. 설문분석결과 비교

1) 2016년도 세종시 설문조사결과와 비교 (2016.12)

- 도로명주소 인지도는 98.2%로, 2016년 96.8%대비 1.4% 상승함.
(행안부 조사결과(전국평균) : 89.7%(12.12), 94.7%(13.12), 97.5%(14.12))
- 도로명주소 숙지도는 98.0%로, 2016년 95.6%대비 2.4% 상승함.
 - 내 주소를 정확히 알거나 어렵פות이 아는 정도. 이중 정확히 아는 비율은 83.9%, 어렵פות이 아는 비율은 14.1%임(행안부 조사결과(전국평균) : 67.5%(12.12), 79.5%(13.12), 86.5%(14.12))
- 도로명주소 활용도는 97.2%로, 2016년 93.6%대비 3.6% 상승함.
(행안부 조사결과(전국평균) : 24.4%(13.12), 70.8%(14.12))

(세종시) : 35.0%(‘13.12), 70.6%(‘14.12), 88.0%(‘15.12))

- 도로명주소 만족도는 2016년에는 조사하지 않음.
- 2016년과 공통적으로 제시된 불편사항으로는 도로명주소가 너무 길고 어려움, 예전 주소 이중 사용으로 헷갈림, 인터넷, 내비게이션에서 도로명주소로 검색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 2016년과 공통적으로 제시된 개선사항으로는 인터넷, 내비게이션에 도로명주소 검색되도록 개선, 동지역 마을 등 도로명에 명칭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인지도는 도로명주소 인지를 못한 소수대상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며, 숙지도는 본인의 거주지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바르게 표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함.
- 활용도는 공공기관 등 의무적 사용보다 자연스런 일상생활에서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도로명주소의 편리성과 장점을 부각시켜 만족도를 높이는 정책이 필요함.

2) 경기도 설문분석결과와 비교 (2016.8)

- 응답자의 58.2%가 자신의 집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정확히 알고 사용함.
- 도로명주소 부여방식이나 표기법에 대해서는 대충알거나 모르는 경우가 많아 도로명주소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음.
- 도로명주소만 사용하는 사람은 18.8%에 불과 했으며, 대부분 지번주소와 혼용(47.8%)하거나 지번주소(33.4%)만 사용.
-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에 대한 비교에서도 도로명주소가 오히려 불편하다는 의견이 56.1%를 차지.
- 도로명주소를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기억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50.7%로 가장 많았고, ‘사용할 일이 없다’가 27.0%, ‘위치찾기가 더 어렵다’는 의견이 20.7%로 나타남.
- 도로명주소는 민원업무나 우편물 등 공공 부문에서 주로 사용.

- 도로명주소가 정착되기 위한 개선사항으로 도로명주소 표지판 등 안내시설문의 추가설치, 생활 속에 도로명주소 정착지원(57.1%), 홍보나 교육(53.7%)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남.

3) 서울시 설문분석결과와 비교 (2017.5)

- 도로명주소 제도를 알고 있는 인지도는 99.4%로 높음.
- 도로명주소 숙지도는 76.2%는 “정확히 알고 있다”, 20.9%는 “어렵듯이 알고 있다”, 2.9%는 “모른다”로 응답.
- 도로명주소에 대해 서울시민 50.7%는 만족, 49.3%는 불만족.
- 도로명주소가 불편한 이유는 어느 동네인지 알기 어렵다(76.6%), 주소를 기억하기 어렵다(58.9%), 도로명주소 체계를 이해하기 어렵다(50.8%) 순으로 나타남.
- 도로명주소를 효과적으로 알려주는 방법은 각 가정에 안내문과 스티커 교부(39.9%), 언론매체 홍보(21.2%), 온라인홍보(9.9%) 순으로 응답함.

4) 서울시 서대문구 설문분석결과와 비교 (2017.12)

- 도로명주소 제도를 알고 있는 인지도는 97.54%로 높음.
- 도로명주소 숙지도는 정확히 또는 어렵듯이 알고 있다가 90.0%로 응답
- 도로명주소를 써본 적이 있다는 활용도는 95%가 응답함.
- 도로명주소는 민원업무나 우편물 택배 등 공공 부문에서 주로 사용.
- 도로명주소가 불편한 이유는 외우기 어렵다, 도로명만으로는 어느 구인지 알수 없다, 도로명 안내판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있었음.

[표 4-25] 도로명주소 설문조사 비교

비교항목	2017년 세종시	2016년 세종시	2016년 경기도	2017년 서울시	2017년 서울시 서대문구	
인지도	98.2%	96.8%	-	99.4%	97.54%	
숙지도	전체	98.0%	95.6%	-	97.1%	90.0%
	정확히	83.9%	77.9%	58.2%	76.2%	-
	어렵듯이	14.1%	17.7%	-	20.9%	-
활용도	97.2%	93.6%	-	-	95%	
만족도	51.5%	-	-	50.7%	-	

- 타 설문조사결과와 비교시, 2017년 세종시의 도로명주소 인지도, 숙지도, 활용도, 만족도 모두 양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 타 설문조사결과에서도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관련은 ‘도로명주소를 기억하기 어렵다’, ‘공간적 위치 파악이 어렵다’, ‘도로명주소 체계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공통적으로 다수 있었음.

도로명주소 활성화방안

제1절 도로명주소의 쟁점사항

제2절 세종시 도로명주소 활성화방안

5장

제5장 도로명주소 활성화방안

제1절 도로명주소의 쟁점사항

1. 높은 인지도 대비 일상생활에서 낮은 사용률

- 대부분의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인지하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사용은 여전히 저조한 편임.
 - 일상생활에서 지번주소로 혼용할 수 있기에 필요성을 적게 느낌.
 - 부여방식, 표기법 등 도로명주소에 대한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낮음.
- 도로명주소 사용에 있어서 기억하기 어려움.
 - 편리성을 위해 도입한 도로명주소이지만, 숙지하기가 어려움.
 - 기억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동(마을)명칭과 다르거나, 도로명주소의 정확한 체계를 모르거나, 지번주소의 혼용 등임.
- 공공부문 대비 다소 저조한 일상생활 사용률
 - 민원처리, 우편물발송, 택배 등 공공부문에서는 도로명주소의 의무화로 인해 활용도가 높으나, 음식배달, 길찾기 등 일상생활에서는 도로명주소 사용이 저조함.

2. 도로명주소 체계 및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

- 도로명주소 체계로 공간적 위치 인식의 어려움.
 - 면 또는 점의 형태로 이루어진 지번주소에 비해 도로명주소는 선으로 이어진 도로에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서 면, 점으로 공간적 위치

인식에 익숙한 시민들은 어려움이 있음.

- 'OO동 OO건물'의 법정동기반 위치인식에 비해, 'OO로 OO번 OO건물'의 위치는 쉽게 연상하기 어려움.
- 지나치게 긴 도로구간의 도로명이나, 생소한 도로명의 경우 위치를 가늠하기 어려움.

○ 도로명주소 부여 방식의 이해도 부족

- 도로명주소 체계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 도로명으로만으로는 위치찾기에 많은 어려움을 느낌.
- 지자체별 상이한 도로명주소 부여방식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새로 진입한 세대들은 이해가 어려울 수 있음.

○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는 부분 존재

- 도로가 없는 곳에 위치한 건물의 경우에는 주소를 지정하는 것이 어려움.
- 토지매매와 같은 경우에서 지번주소만 사용할 수 있음.

3.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에 대한 문제

○ 도로구간 미설정으로 인한 문제

-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 내 도로구간을 설정하지 않아 도로명과 기초번호로 건물의 위치를 찾을 수 없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새주소 체제로 인한 혜택이 적다고 할 수 있음.

○ 도시지역의 종속구간 처리 문제

-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를 독립적으로 하지 않아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법정리구역 내 종속구간 처리 문제

- 법정동 내 마을 영역을 표현하기 위해 마을을 하나의 도로명으로 표현하

는데, 이 경우 마을 내 건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나타남.

○ 도로명 글자수 과다의 문제

- '로' 도로명 하나를 표시하는데 너무 많은 글자수가 필요하며, 이는 정보 처리에 많은 비용이 들고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

○ 표기양식의 문제

- 도로명 표기양식에서 국제주소표준에 어긋남(ex: 하나의 도로명에 로(ro)와 길(gil) 두 개의 도로유형을 포함할 경우).

4. 기능 및 홍보의 문제

- 중앙정부 및 지자체들은 많은 비용을 들여서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 홍보 및 교육하였으며, 도로명주소관련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적용되었으나, 상당부분 정책들이 도로명주소에 대한 전환, 인지도 및 숙지도 향상에 집중된 경향이 있음.

- 지번주소에 비해 도로명주소의 핵심 기능인 위치 찾기와 경로 찾기 기능 등 도로명주소에 대한 장점을 강조한 홍보를 통하여 도로명주소에 대한 필요성을 부각시켜야 함.

제2절 세종시 도로명주소 활성화방안

1.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한 맞춤형 홍보 및 교육

1) 신도심과 읍면지역

- 세종시 특성상,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전환한 읍면지역과 도로명주소만 부여되었던 신도심지역은 각각 맞춤형 시책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도로명주소의 만족도와 선호도가 읍면지역이 신도심지역보다 상당히 낮음.
 - 신도심지역은 지속적으로 신규전입 세대가 많으므로, 신규전입세대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함(거주 6개월 미만의 경우, 숙지도 및 만족도 낮음).

2) 계층별 홍보 및 교육

- 숙지도 및 만족도가 낮은 계층들에 초점을 두고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함.
 - 숙지도는 '학생, 10~20대, 거주 6개월 미만', 만족도는 '직장인, 가정주부, 20대, 거주 6개월 미만'으로 계층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숙지도 및 만족도향상을 위해서는 계층별 특성에 맞게 접근하는 시책이 효율적임.
- 숙지도 및 만족도가 낮은 지역들의 도로명 주소 유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선이 필요함.

2. 편의성향상을 위한 도로명 개선

1) 도로명주소명 가이드라인 제시

- 주소가 지나치게 길 경우 외우기가 쉽지 않음.
 - 도로명주소가 길고 숫자가 포함되어 있어 외우기 어려움.

- 도로명주소의 길이에 관해서 별도 규정은 없으나 사용의 편리성 및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함.
- 도로명주소가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역사성(문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도로명주소는 국제표준을 따르고 있으나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 하지만, 지역의 특성 및 역사성을 반영할 경우 정확한 위치파악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있으므로 원칙에 의한 조율이 필요함.

2) 공간적 위치를 연상할 수 있도록 개선

- 도로명만으로 어디 있는 도로인지 가늠할 수 없는 도로명은 지역주민들에게 불만의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외지인도 인지하기 어려움.
 - 도로명을 지역의 명물 또는 위인의 이름으로 할 경우나 외래어 표기일 경우 정확한 위치파악이 어려움.
- 공간적 위치가 절대적으로 인지될 수 있는 대표적인 도로명들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음.
 - 도로명의 이름 개수가 많은 만큼 모든 도로명들의 공간적 위치를 알 수 없으므로, 대표적인 도로명들의 공간적 위치를 인지시키고 연결되는 다른 도로명들을 연상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할 필요가 있음.

3) 원칙기반의 도로명주소 개선

- 원칙 없이 바뀌는 도로명주소로 인한 혼란.
 - 일시적 민원으로 인한 도로명주소의 잦은 변경은, 장기적으로는 결국 이용자의 혼란과 제도의 장점을 퇴색시킴.
 - 도로명주소를 정할 때에는 지역의 역사성과 주민의 공감대를 반영하고, 가급적 변경을 자제하며, 원칙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3. 지번주소 혼용상황 감소

1) 도로명주소 노출도 증가

- 도로명주소가 생활화되려면 일상에서 자주 도로명주소를 노출하는 것이 중요.
 - 주민들과 방문객들의 쉬운 위치 찾기와 길 찾기를 위해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장소에 안내시설 확충이 필요.
 - 보행자위주의 버스정류장, 교차로 및 골목길·이면도로 등에 도로명 안내 시설물 설치가 필요.
-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지번주소를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곳 중에서 부동산 중개소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지번주소를 사용해야하는 토지매매를 제외하면, 계약서에는 도로명주소기입이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부동산 중개소가 지번주소를 많이 사용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 이는 신규전입이 많은 신도심지역의 공공주택이나 건물을 안내할 때, 법정동기반의 'OO동 OO아파트(건물)'의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 정확하게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법정동을 포함하여 안내하더라도 최소한 'OO동 OO로(길) OO아파트(건물)'의 형태로 도로명을 자주 노출시키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지번주소 혼용상황 억제

- 도로명주소의 인지도는 매우 높으므로, 지번주소가 혼용 가능할 경우 지번주소 사용을 억제하고 도로명주소를 사용토록 해야함.
 - 내비게이션 주소입력, 배달음식 주문, 인터넷 회원가입 등에 도로명주소 위주로 사용토록 함.
- 민간부문 사업장들의 홈페이지, 영수증, 명함 등에 도로명주소 기입전환

을 장려하여, 지번주소 사용을 억제하고 이용자들이 생활속에서 도로명주소를 자주 접하도록 함.

4. 공동체 커뮤니티중심으로의 정서적 전환

1) 도로명주소의 정서적 공동체화

- 도로명주소가 생활화되려면 정서적으로 도로명에 대한 공동체 소속감이 필요함.
 - 설문조사에 의하면 도로명주소의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외우기 어렵다’, ‘동(마을)명칭이 없어서 불편하다’의 의견이 많음.
 - 이는 도로명주소에서는 동·리·구·통·반이 없기 때문에 개인은 동(마을)이란 생활공동체 구성원의 위치에서가 아니라, 국가 또는 지자체와 직접 관련을 가진다는 원리에 기초하고 있어서, 도로명에 대한 공동체 커뮤니티 소속감이 낮음.
 - 동(마을)에서 느끼는 생활공동체의 소속감을 도로명을 기존 동(마을)명을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도로명에서도 느낄수 있도록 정서적 전환 및 지원이 필요함.

2) 도로명을 통한 커뮤니티 구축

- 지번주소에서의 동·리·구·통·반의 생활공동체 커뮤니티처럼, 도로명을 통한 커뮤니티 구축에 대한 신중한 고민이 필요함.
 - 일정 인구밀도이상을 가진 같은 도로명에 거주자들, 같은 도로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시민들, 같은 도로명에 위치한 업체들 등 도로명기반의 커뮤니티 구축을 장려하여 도로명에 대한 소속감을 향상.

5. 도로명주소의 기능적 장점 및 잠재성 강조

1) 보행자위주 도로명주소로 위치찾기 활용

- 지번주소에 비해 도로명주소의 장점은 위치찾기 및 길찾기 기능이 우월함.
 - 내비게이션을 주로 활용하는 차량이용자보다는 보행자들이 도로명주소로 편리하게 위치나 길 찾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며, 도로명주소의 장점을 부각시켜야함.
 - 이를 위해서는 도로명주소에 대한 부여방식과 표기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홍보와 교육이 같이 수반되어야 함.

2) 응급 및 위험상황시 안전사고 대응

- 응급 및 위험상황시 도로명주소를 통해 위치를 알려주고 경찰·소방 등 응급구조기관의 현장대응을 신속하게 유도할 수 있는 기능이 우월함.
 - 국민안전시설의 기초번호나 국가지점번호판 등의 도로명안내시설물 홍보와 교육을 통해 도로명주소의 안전사고 대응의 장점을 부각시켜 도로명주소의 필요성과 장점을 강조.
 - 안전사고 대응을 위해 다중 이용시설이나 위험상황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도로명안내시설의 추가 설치 필요.

3) 제4차 산업혁명 대응

- 공간정보기반의 제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번주소보다는 도로명주소가 유리함.
 - 행정안전부는 사물의 이동이나 실내에 대한 위치표시와 이동경로 안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므로 도로명주소기반의 드론택배, 자율주행차 등의 신성장 사업을 지원할 예정임.

- ICT 기술의 발달과 위치기반 공간정보의 중요성의 증대로 도로명주소기반 신성장사업에 대한 연계 및 사업창출이 필요함.

결론

제1절 연구결과 종합

제2절 정책 제언

제6장 결 론

제1절 연구결과 종합

- 본 연구는 2014년 도로명주소의 전면사용이 의무화된 이후, 세종시의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 개선 및 정책방안을 도출하였음.
- 도로명주소관련 선행연구 및 국내외 도로명주소정책 사례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세종시 도로명주소관련 정책을 분석하고, 세종시민들의 도로명주소 인지도, 활용도 및 만족도, 불편사항 등을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입장에서 도로명주소의 사용실태 분석과 개선사항을 도출함.
- 타 지자체의 설문조사결과에 비교하여, 세종시민들의 사용실태를 비교하고 특성을 파악함.
- 도로명주소의 일반적인 쟁점사항에 대한 토의와 세종시 도로명주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1. 도로명주소 도입 및 추진목적

- 도로명주소는 건물번호를 주소로 사용했던 역사적 배경,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보편성, 위치 찾기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도로마다 이름을 부여하고, 그 도로를 따라 위치한 건물에 번호를 체계적으로 부여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표현하는 주소임.
- 도로명주소의 도입목적은 도로명주소를 통해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도로명주소법」은 2006년 10월 4일 제정되어 2007년 4월 5일 시행되었고, 주소에 관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토록 규정받고 있음.

- 2014년 1월에 도로명주소제도 전면 시행.
- 도로명주소의 도입목적에 맞게 도로명주소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로명주소의 표기법, 부여방법, 안내시설 보는 법 등의 교육이 필요함.

2. 도로명주소 선행연구 및 국내외 사례

- 1996년에 도로명주소체계의 도입을 결정하고, 2006년에 도로명주소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2014년에 본격적으로 도로명주소제도를 시행했기에,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이전에 도로명주소관련 선행연구들이 수행되었으며, 시행이후에는 도로명주소 개선을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었음.
- 선행연구에서 예상하였던 문제점들이 시행 후에 표면화된 부분도 있고, 개선방안으로 제안했던 내용들도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많이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앙정부(행정안전부)와 지자체들은 도로명주소의 정착을 위해 많은 비용을 들여,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홍보와 교육을 하고 있음.
- 오래전부터 도로명주소체계를 사용하고 있는 국외의 경우에는 공공·민간부분에서 시민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위치정보를 알리고 있으며 공공과 민간에서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활용하고 있음.
- 국외사례에서는 보행자위주의 도로명판, 다양한 자율형 건물번호판, 상세주소 안내판에 대해 사례가 다수 조사되므로, 우리나라에서도 확대 설치할 필요가 있음.

3. 세종시민대상 도로명주소 설문결과

- 세종시는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 및 문제점 개선을 위해, 도로명주소 서포터즈, 안내지도 발간, 퀴즈행사, 홍보전시회,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교육, 어린이 및 초등학생 도로명 문화탐방, 자율형 건물번호판 공모전 등 다양한 홍보 및 교육정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으며, 도로명주소시스템 DB품질개선

등 기술서비스 부분에서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음.

- 세종시민들의 도로명주소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세종시 거주 만10대이상 550명 시민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인지도, 숙지도, 활용도, 만족도, 불편 및 개선사항 등 5개 분야 14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음.

[표 6-1] 주요 설문분석결과

구분	내용	조사결과
인지도	들어본 적 있음 : 98.2%	<p>단위(%)</p> <p>■있다 ■없다</p>
숙지도	알고 있음 : 98.0% (정확히 알고 있음 : 83.9% 어렵듯이 알고 있음 : 14.1%)	<p>단위(%)</p> <p>정확히 알고 있다 83.9 어렵듯이 생각나는 정도이다 14.1 모른다 2.0</p>
활용도	사용해본 적 있음 : 97.2%	<p>단위(%)</p> <p>■있다 ■없다</p>
만족도	만족함 : 51.5% (매우 만족함 : 13.0% 만족하는 편임 : 38.5%)	<p>단위(%)</p> <p>매우 만족한다 13.0 만족하는 편이다 38.5 보통이다 37.2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8.4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3.0</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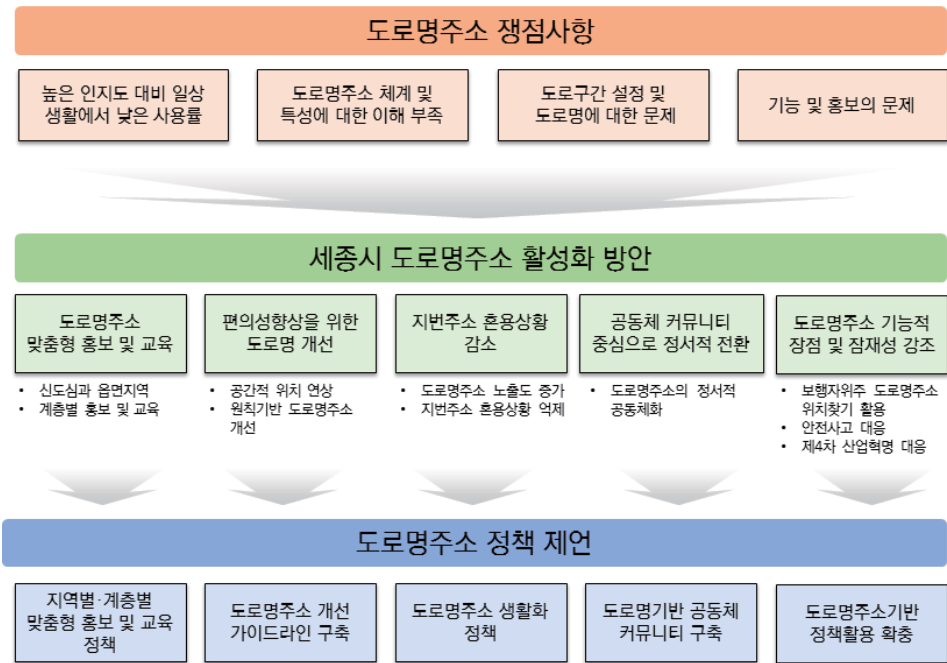
- *(참조) 2016년 설문분석과 비교 (2016년은 만족도 항목 부재)
- 도로명주소 인지도는 98.2%로 2016년 96.8%대비 1.4% 상승
 - 도로명주소 숙지도는 98.0%로 2016년 95.6%대비 2.4% 상승
 - 도로명주소 활용도는 97.2%로 2016년 93.6%대비 3.6% 상승

4. 세종시 도로명주소 활성화 방안

- 세종시 특성상,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전환한 읍면지역과 도로명주소만 부여되었던 신도심지역은 각각 맞춤형 시책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현 시점에서는 도로명주소 인지도 향상보다는 숙지도와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도로명주소정착을 위해 더 효율적임.
- 도로명주소 사용의 편리성 및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며, 도로명주소 명칭의 개선이 필요할 때는 중앙부서나 지자체의 원칙기반하에 시행되어야함.
- 도로명주소가 생활화되려면 일상에서 자주 도로명주소를 노출하고, 지번주소 혼용률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함.
- 도로명주소가 생활화되려면 지번주소체계에서의 동·리·구·통·반의 생활공동체 커뮤니티처럼 정서적으로 도로명에 대한 공동체 소속감이 필요함.
- 도로명주소의 기능적 장점을 강조하여, 도로명주소의 활용성 및 잠재성을 더 부각시켜야 함.

제2절 정책 제언

- 국내외 정책 및 사례조사 시사점, 세종시 도로명주소 정책사례, 세종시민 설문조사분석결과 및 타 지자체 설문조사분석결과 비교를 토대로 도로명주소의 쟁점사항 및 세종시 도로명주소 활성화방안을 파악하고, 이와 연계한 정책들을 제언하고자 함.



[그림 6-1] 도로명주소 정책제언

1. 지역별·계층별 맞춤형 홍보 및 교육 정책

- 2014년 도로명주소 시행이후,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도로명주소가 점차적으로 정착되어가는 단계이므로 불특정 다수의 대상에게 홍보 및 교육하기보다는 도로명주소의 숙지도나 만족도가 낮은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별 맞춤형 홍보 및 교육

- 세종시 특성인 신도심지역은 계획도시이며 이주민위주의 신규전입세대가 많은 지역이며, 읍면지역은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의 전환과정을 가진 지역이므로, 도로명주소에 대한 숙지도 및 만족도가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지역별 맞춤형 홍보 및 교육 정책을 적용해야 함.

계층별 숙지도·만족도향상을 위한 홍보 및 교육

- 도로명주소의 숙지도 향상을 위해서도 계층별 맞춤형 홍보 및 교육 정책을 통해 정확히 안다고 생각하는 그룹은 바른 표기에 대한 지속적 홍보가 필요할 것이며, 어렵פות이 아는 그룹과 잘 모르는 그룹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홍보 및 교육할 필요가 있음.
- 도로명주소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도로명주소의 표기 및 부여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도로명주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위치 및 길찾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경상남도는 도민 전 계층을 어린이, 초중고교생, 중장년층, 황금기 어르신으로 4개 연령대(1~4세대)로 구분하여 세대별 눈높이게 맞는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시행하였듯이, 세종시는 숙지도나 만족도가 취약한 계층을 전략적으로 그룹화하여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함. (ex. 숙지도1 : 초등학생 및 10대, 숙지도2 : 신도심 거주기간6개월미만, 만족도1 : 읍면지역, 만족도2 : 주부, 직장인 등)

예시. 계층별 홍보 및 교육 그룹화

구분		대상	정책 (예시)
숙 지 도	1	초등학생 및 10대	초등학교 순회교육
	2	신도심 거주기간6개월미만	전입세대 도로명주소 문자발송
	∴	∴	∴
만 족 도	1	읍면지역	도로명기반 마을행사
	2	주부, 직장인	민간사업장 도로명주소 전환 장려
	∴	∴	∴
∴	∴	∴	∴

효과적인 시책의 지속적 추진 및 지원

- 세종시 도로명주소 시책 중에 효과적이라고 응답했던 전입세대 도로명주소 문자안내 발송,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발간 등의 서비스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해야 함.
- 경기도 시흥시가 주변 지역을 잘 아는 주민과 경찰·소방 및 도로명주소 서포터즈 등이 함께 참여해 진행한 ‘로드체킹’을 통해 도로명주소의 개선사항(보행자를 위한 안내시설, 다국어 표기 등)을 도출하였듯이, 한편으론 도로명주소의 활용도가 높은 계층을 활용한 도로명주소 개선사항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음.

2. 도로명주소 개선 가이드라인 구축

- 행정안전부에서는 ‘제3차 주소정책 추진 종합계획’을 통해 도로명주소를 정비·개선할 예정이며, 중앙정부차원에서 도로명주소 가이드라인을 구축하여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긴 하나 지자체 내부에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원칙적인 가이드라인을 구축하여, 개선시 지역 주민들의 혼란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세종시 자체 개선 가이드라인 원칙 구축

- 개선에 의해 도로명주소를 변경할 때는 지역의 역사성과 주민의 공감대를 반영하고 가급적 변경을 자제하며 원칙에 따라 변경하여야 함.
- 단순히 숙지성과 활용성을 위해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명주소의 근본적인 취지와 도입의도에 맞도록 도로명주소 체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교육을 바탕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공간적 위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대표적 도로명 부각

- 위치나 길을 안내할 때 법정동이나 특정건물대신 도로명을 통해 공간적 위치를 인지할 수 있도록 공간적 위치를 파악하기 쉬운 대표적인 도로명들을 선별하여 부각시키고 홍보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기존의 동(리) 대신 도로명을 통해 '대략의 위치 파악'이 가능하도록 유도함.

3.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한 도로명주소 노출 증가

- 도로명주소의 활용도가 공공기관, 우편물, 택배 등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를 자주 노출시키고, 지번주소를 혼용할 수 있는 상황을 줄여야 함.

보행자용 도로명 안내시설물 확충

- 주민들과 방문객들의 쉬운 위치·길 찾기를 위해서, 보행자위주의 버스정류장, 교차로 및 골목길·이면도로 등에 도로명 안내시설물 확대 설치가 필요.
- 도로명주소체계의 교육시에도, 도로명주소체계를 전부 교육하기보다는 보행자가 직접 이동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음.

민간부문 사업장 도로명주소 기입전환 장려

- 관내 민간부문 사업장들의 홈페이지, 영수증, 명함 등에 도로명주소 기입 전환을 장려하거나 비용을 지원하여 지번주소 사용을 억제하고 이용자들이 생활 속에서 도로명주소를 자주 접하도록 해야 함.
- 민간부문 도로명주소 활용 우수사업자에 대해서는 표창하고, 사례를 전파하여야 함.

도로명주소기반 행사 및 이벤트 확대

- ‘도로명 안내시설만을 활용해 길찾기’, ‘특정도로명 마라톤 대회’ 등 여러 가지 행사나 축제시 도로명을 자주 노출시키는 기획을 통해 생활화 시켜야 함.

4. 도로명기반 공동체커뮤니티 구축

도로명에 대한 공동체 소속감 유도

- 도로명주소가 생활화되려면 정서적으로 도로명에 대한 공동체 소속감이 필요함.
- 기존 지번주소에서 ‘내가 속해있는 동(마을)’에서 느끼는 생활공동체의 소속감을 도로명주소에서도 ‘내가 속해있는 도로명’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정서적 유도 전환이 필요함.
- 기존 점, 면개념의 동(마을)에서, 선 개념의 도로명으로 커뮤니티 그룹화에 대해서 추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도로명기반 커뮤니티 구축 및 활용

- 일정 인구밀도이상을 가진 같은 도로명에 거주하는 주민들, 같은 도로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시민들, 같은 도로명에 위치한 동종업체들 등 도로명기반의 커뮤니티 구축을 장려하여 도로명에 대한 소속감을 향상시키는 정책이 필요함.

- ‘본인집이 속해있는 도로명의 기·종점 알기’, ‘도로명기반 지역주민 단합대회 또는 동호회’, ‘내가 주로 이용하는 도로명들 알기’, ‘OO업체들로 특화된 OO거리’ 등 도로명에 대한 소속감과 정서적 공동체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5. 도로명주소기반 정책활용 및 신성장사업 확충

- 도로명주소 도입을 결정했던 1990년대 중반에 비해, 현재는 도로명주소의 우월한 기능인 위치·길 찾기가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의 발달로 다소 감소한 경향이 있으나, 이러한 위치·길 찾기 장점을 다른 중요 시책이나 신성장사업에 연계하여 도로명주소의 장점과 잠재성을 부각시킬 필요성이 있음.

보행자위주의 도로명주소 활용도 향상

- 개인차량이용자보다는 대중교통이용자와 보행자위주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대 설치와 도로명주소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도로명주소체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수반되어야 함.
- 개인차량이용자도 생소한 지역이 목적지인 경우 주차 후 근접거리의 이동은 보행자와 마찬가지로 도로명주소 활용이 도움이 됨.
- 공동주택이 많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상세주소 안내시설 활성화를 적극 지원해야 함.

응급 및 위험상황시 활용도 향상

- 응급 및 위험상황시 도로명주소는 응급출동 대응을 신속하게 유도할 수 있는 기능이 우월하므로 안전사고 대응을 위해 다중 이용시설이나 위험상황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도로명안내시설의 추가 설치 필요하며, 안전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도 도로명주소를 적극 활용하여야 함.
- 강원도 평창군의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한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와

같이, 자율형 건물번호판에 관광안내, 마스크트 등을 활용하여 누구나 쉽게 도로명주소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며 디자인을 통해 범죄예방뿐만 아니라 도시경관을 위한 요소로도 적극적으로 활용 가능함.

□ 제4차 산업혁명 도로명주소기반 신성장사업 연계

- 제4차 산업혁명은 공간정보기반의 데이터를 중요시하며, 도로명주소는 이 점에서 매우 유리하므로 도로명주소를 활용한 드론 택배, 자율주행차 등 신성장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행정안전부의 '주소기반 드론 배달 운영방안 시범사업'에 대응하여, 세종시의 드론 배달 유형화 및 주소화 가능지역 선별, 드론 항로 및 운행에 대한 규제 등을 세종시에서 선도적으로 자체 검토하여 중앙정부 시범사업의 테스트베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건물뿐만 아니라 국민안전시설 및 국민편의시설에 대해서도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거나 정비하여, 도로명기반으로 검색하고 모니터링하여 주민들의 생활안전과 편의성을 확보해야 함.
- 자율주행차량의 대중화, 전기자동차, 공유차량, 공유주차장 등의 패러다임의 전환시점에서 위치정보 서비스가 중요해지므로, 도로명주소기반의 전기충전소, 공공주차장, 공유주차장 등을 정비하여 통일된 정보체계를 구축해놓아야 함.

부 록

제1절 도로명주소법 및 세종시 도로명주소 조례

제2절 도로명주소 설문지

부 록

제1절 도로명주소법 및 세종시 도로명주소 조례

1.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주소정책과) 02-2100-3659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지점번호의 표기·관리·활용과 도로명주소의 부여·사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3.>

1. "도로명주소"란 이 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상세주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의하여 표기하는 주소를 말한다.
2. "건물등"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현실적으로 30일 이상 거주나 정착된 활동에 이용되는 인공구조물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조물을 말한다.
3. "도로명주소사업"이란 도로와 건물등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관련 시설 등을 설치·유지관리·활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도로구간"이란 도로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도로의 시작지점과 끝지점 사이를 말한다.
5. "도로명"이란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도로구간마다 부여한 이름을

말한다.

6. "기초번호"란 도로구간의 시작지점부터 끝지점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
7. "건물번호"란 건물등(둘 이상의 건물등이 현실적으로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등의 전체를 말한다)마다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
8. "상세주소"란 공동주택 등의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에 적혀 있는 동(棟)번호, 호(號)수 또는 층수를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를 상세주소로 본다.
 - 가.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층·호를 세분하여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된 경우
 - 나.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동·층·호를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된 경우
9. "도로명주소기본도"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면과 지적공부(地籍公簿)를 활용하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 등이나 그 밖의 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한 도면을 말한다.
10. "도로명주소안내도"란 도로명주소기본도를 이용하여 도로명주소를 안내할 목적으로 작성한 지도를 말한다.
11. "도로명주소시설"이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명판[지주(支柱) 등 그 부속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도로명주소안내판(지역안내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산자료, 전산시설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부속 시설물을 말한다.
12.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이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 및 기초번호판을 말한다.
13. "국가기초구역"이란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면·동의 면적보다 작게 일정한 경계를 정하여 나눈 구역을 말한다(이하 "기초구역"이라 한다).
14. "구역번호"란 기초구역마다 부여한 번호를 말한다.
15. "국가지점번호"란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번호(문자와 아라비아숫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이하 "지점번호"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주소(건물등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소재지, 위치, 장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구역의 적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주소, 기초구역 및 지점번호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주소, 기초구역 및 지점번호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5조(도로명주소사업 추진 종합계획의 수립·확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계획 수립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침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지침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도 집행계획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수립·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종합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대상사업 구분과 대상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3. 사업별 내용과 사업량에 관한 사항
4. 사업 추진기간 및 연도별 추진 내용에 관한 사항
5. 필요한 사업비에 대한 판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도로명주소 전환 대상지역과 전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 수립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8.4.]

제6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확정) ① 시·도지사는 제5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협의를 거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8.4.]

제7조(사업의 시행자) 종합계획에 의한 사업의 시행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8조(도로명 부여 등)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의 부여·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

2. 도로구간의 설정·변경·폐지

3. 도로명의 부여·변경·폐지

4.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5. 기초번호의 부여·변경·폐지

6. 도로명주소기본도의 작성

7. 그 밖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현황자료 및 시장등의 의견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 해당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도로구간의 설정 또는 변경
2. 도로명의 부여 또는 변경
3. 기초번호의 부여 또는 변경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그 신청을 받은 도로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현황자료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 해당 시·도지사와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 각 호의 결정사항에 변경요인이 발생하였거나 2개 이상의 시·도 또는 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를 새롭게 확인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도로구간과 기초번호를 포함한다)을 결정하거나 결정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시장등은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만을 수렴한다)한 후 제22조의2에 따른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명주소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과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⑥ 제5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로구간의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주소사용자"라 한다)의 5분의 4 이상 서면으로 동의하여 도로명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5.7.24.>

1. 건물등의 명칭(둘 이상의 건물등이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건물군

을 포함한다)과 유사한 명칭으로 도로명 변경을 신청한 경우. 다만, 2011년 7월 29일 현재 부여된 도로명으로 환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둘 이상의 시·군·자치구 또는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을 변경하는 경우

3. 시장등이 다른 도로명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4. 제8항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 또는 변경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⑦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도로의 현황과 제2항 각 호의 결정사항을 종합하여 매년 말을 기준으로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2017.7.26.>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전문개정 2011.8.4.]

제8조의2(명예도로명) ① 시장등은 제8조에 따라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업 유치, 국제교류 등만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명(이하 "명예도로명"이라 한다)을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도로명주소안내시설과 도로명주소안내도에서는 명예도로명을 도로명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③ 명예도로명의 부여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8조의3(기초구역의 설정 등) ① 시장등은 기초구역의 설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

2. 기초구역(경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정·변경·폐지

3. 구역번호의 부여·변경·폐지

4. 그 밖에 기초구역과 구역번호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등이 기초구역 및 구역번호를 설정(부여)·변경·폐지하려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국 단위로 구역번호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도별로 구역번호의 사용범위를 할당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제3항에 따라 구역번호의 사용범위를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

단위로 구역번호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시·군·구별로 구역번호의 사용범위를 할당하여 해당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8.4.]

[종전 제8조의3은 제8조의6으로 이동 <2011.8.4.>]

제8조의4(상세주소 부여 등) ① 시장등은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이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동·층·호(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경우라도 이를 세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상세주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자 또는 임차인(무상으로 사용, 수익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부여·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나 소유자의 폐지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 기초조사

2. 상세주소(동·층·호의 적용범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부여·변경·폐지

3. 그 밖에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문서에 등록된 상세주소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시장등은 도로명주소 사용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유자 및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기초조사와 소유자 및 임차인의 의견 수렴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변경·폐지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본조신설 2011.8.4.]

[종전 제8조의4는 제8조의7로 이동 <2011.8.4.>]

제8조의5(지점번호의 표기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점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법인 등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등이 없는 지역에 철탑,

수문, 방과제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지점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장관, 경찰청장, 소방청장, 산림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긴급구조 등의 수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점번호를 안내하는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장은 지점번호를 표기한 시설물을 설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고 그 사실을 해당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지점번호 표기위치의 측량
2. 제1호의 위치에 부합하는 지점번호의 선정
3. 그 밖에 지점번호를 표기한 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지점번호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점번호를 표기한 시설물의 설치 위치를 도로명주소기본도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지점번호의 부여방법과 기준, 지점번호 표기위치의 측량방법, 선정된 지점번호의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8.4.]

제8조의6(도로명주소대장)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나타내기 위한 도로명주소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도로명 또는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폐지
2.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설정·변경·폐지
3. 도로명주소에 사용되는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4.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정비·철거
5. 관련 지번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참고사항의 변경
6.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처리장치에 의하여 작성·관리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8.4.]

[제8조의3에서 이동 <2011.8.4.>]

제8조의7(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장소와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본조신설 2009.4.1.]

[제8조의4에서 이동 <2011.8.4.>]

제9조(도로명주소안내도 등의 작성·제작·배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작성하여 제작·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도로명주소안내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등이 아닌 자가 신청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광고를 게재한 경우에는 광고를 신청한 자가 광고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제품을 제작·판매하거나 그 밖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도로명주소안내도의 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2017.7.26.>

1. 제작대상 지역이 전국 또는 둘 이상의 시·도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2. 제작대상 지역이 해당 시·도 또는 둘 이상의 시·군·자치구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인 경우: 시·도지사
3. 제작대상 지역이 해당 시·군·자치구인 경우: 시장등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도로명주소안내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有償)으로 제공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명주소의 활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요청하였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⑥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지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6.3.>

⑦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수입은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8.4.]

제10조(원인자 부담) ①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으로 인하여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교체·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승인·준공(다른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 등 사용승인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직접 설치·교체·철거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로명 주소안내시설을 설치·교체·철거하지 아니하거나 비용(이하 "설치비용"이라 한다)으로 부담하려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하고,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준공 신청 시까지 이를 내야 한다. <개정 2017.3.21.>

③ 시장등은 납부의무자가 제2항에서 정한 때까지 설치비용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설치비용의 부과절차, 납부 및 징수 방법, 환급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11조(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설치)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8조의6에 따른 도로명주소대장에 수록한 정보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도로명주소 통합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설치, 업무범위, 자료 관리·활용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12조(자료의 제출요구)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3조(유지관리의 위탁 등)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등은 연 1회 이상 도로명주소시설 등을 일제히 조사하여 없어지거나 훼손된 시설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14조(도로명주소안내판의 광고)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광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안내판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광고사업자의 선정과 광고방법 및 광고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광고비 수입은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15조(도로시설물의 사용)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중 도로명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신호등, 도로표지판, 전선주, 가로등, 전신주 등이 설치된 지주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데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주를 사용하려면 미리 그 지주를 관리하는 관리청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리청 또는 관리자는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주 사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주를 관리하는 관리청 또는 관리자는 지주의 교체·이설(移設)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미리 해당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16조(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의 의무) ①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는 그 건물등의 사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니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명주소시설 설치 등의 업무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②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는 건물등의 벽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해당 시장등에게 재교부받아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물번호판 등이 소유자·점유자의 귀책사유로

훼손되거나 없어진 경우에는 그 소유자·점유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건물등의 소유자는 건물등의 신축·증축 및 개축(改築) 등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때에는 건물등의 사용승인 전에 시장등으로부터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에 드는 비용은 건물등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④ 공동주택이 아닌 다음 각 호의 건물등[「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전에 임대(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상세주소를 사용하려는 건물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해당 건물등의 일부(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층·호를 세분하거나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임대하려는 경우 해당 시장등에게 상세주소를 부여(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아 이를 표기한 안내판(이하 "상세주소안내판"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1. 하나의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건물등의 동(棟)이 다른 경우
2. 건물등의 외벽에 출입구가 별도로 있는 경우
3. 건물등의 내부에서 복도나 계단을 이용하여 출입구가 별도로 있는 경우

⑤ 공동주택이 아닌 제4항 각 호의 건물등의 소유자는 해당 건물등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등에게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하고,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상세주소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세주소안내판의 제작·설치에 드는 비용은 건물등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5.7.24.>

⑥ 제5항의 기한까지 건물등의 소유자가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임차인이 시장등에게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상세주소안내판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⑦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건물등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임차인은 상세주소안내판의 제작·설치에 드는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전문개정 2011.8.4.]

제17조(도로명주소사업 지원 조례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주소를 부여·

관리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유지관리·손해배상공제가입·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09.4.1.]

제18조(도로명주소의 고지 등) ① 시장등은 도로명(도로구간과 기초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명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도로명주소를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기초구역 또는 구역번호를 설정(부여)·변경·폐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 등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18조의2(주소의 일괄변경) ① 시장등은 제8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상세주소가 부여·변경·폐지되거나 제18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부여·변경·폐지되는 경우 소유자·점유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종 문서상의 주소의 변경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17.3.21.>

② 제1항에 따라 시장등으로부터 주소변경의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소유자·점유자가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한다. 이 경우 시장등으로부터 상세주소 변경신청 또는 도로명주소 변경신청(주소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은 공공기관장은 다른 법령에서 수수료를 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무료로 한다. <개정 2015.7.24.>

③ 제2항에 따라 주소변경을 처리한 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장등은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리거나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8.4.]

제18조의3(등기축탁) ① 시장등은 제8조제1항제3호·제4호에 따라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가 부여·변경되거나 제8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상세주소가 부여·변경·폐지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소에 등기명의인의 주소에 대한 변경 등기를 축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축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개정 2017.3.21.>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축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5.7.24.]

제19조(도로명주소 등의 효력) ① 제18조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주소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호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는 각종 공부상(公簿上)의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변경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라 부여된 지번을 주소(이하 "지번방식의 주소"라 한다)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6.3.>

② 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공법관계의 주소로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지번방식의 주소를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할 수 있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부상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한 경우 해당 공부에는 지번방식의 주소를 다시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구역번호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계구역, 우편구역, 관할구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 구역의 기본단위로 한다.

④ 제8조의5에 따라 부여된 지점번호는 긴급구조활동 등에서 위치의 표시로 활용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20조(공법관계의 주소 변경 등) ① 공공기관장은 비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주소 및 위치 관련 전산시스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18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주소를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주민은 도로명주소를 이용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주소를 제18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로 변경할 때에는 전산화가 된 경우에는 전산화에 의한 방법으로 일괄수정하

고, 전산화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빠른 시일 내에 주소 변경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주소 변경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장은 이미 공표한 각종 구역의 표시를 제19조제2항의 기한까지 제1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구역번호로 변경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장은 제3항에 따라 일괄수정되지 아니하는 주소에 대하여는 해당 시장등의 확인을 거쳐 제18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도로명주소로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20조의2(신청의 대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소유자·점유자가 하여야 하거나 할 수 있는 신청을 대신 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1. 공공사업 등에 따라 도로를 개설하거나 건물등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사업시행자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 건물인 경우: 구분소유자가 선임한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가 선임한 대표자를 말한다)
3.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본조신설 2011.8.4.]

제21조(도로명주소의 사용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로명주소를 표시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2009.4.1.>

1.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상의 등록기준지 표시 또는 주소 표시
2. 각종 인·허가 등 행정처분시 주소표시
3. 공공기관 주소의 위치표시
4. 공문서 발송시 주소표시
5. 위치안내표시판 제작과 위치표시 및 위치안내
6. 인터넷 홈페이지의 위치안내
7. 그 밖에 주소 및 위치표시와 관련된 사항

제22조(도로명주소 사용자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

등은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 우편물을 다량으로 발송하는 자에 대한 우편요금 등 수수료의 감면
 2. 우편물을 다량으로 발송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주소검색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택배회사, 음식점 등 배달 업소와 공공기관에 도로명 안내지도를 비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지도를 용도별·규격별로 제작·보급하거나 전산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
 4. 버스·지하철 정류장, 광장, 지하도, 시장 등 공공시설의 위치안내판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위치 표시 지원
 5. 관광호텔 지도, 교통 지도, 렌터카 지도, 관광안내 지도, 백화점 지도,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등 각종 위치 안내 지도에 도로명 안내지도 표기 지원
 6. 그 밖에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 ② 공공기관장이 아닌 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번방식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할 경우에 변경 전과 후의 주소가 하나의 도로명주소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변경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8.4.]

제22조의2(도로명주소위원회) ① 도로명의 부여·변경,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 도로명주소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도로명주소위원회를 두며, 시·군·자치구에 시·군·구 도로명주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② 중앙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도로명주소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종합계획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2. 도로명주소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3. 도로명주소의 사용을 위한 민간부문 및 공공부문의 활용 촉진 등에 관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도로구간과 기초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6.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시·도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시·도 집행계획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3. 시·도의 제11조에 따른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 시·군·구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로명의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2.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3.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등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각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도 및 시·군·구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23조(지도·감독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도로명주소, 기초구역 및 구역번호, 지점번호의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도로명주소, 기초구역 및 구역번호, 지점번호의 세부추진에 관한 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8.4.]

제24조(벌칙) ① 도로명주소시설 또는 지점번호를 안내하는 표지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개정 2015.7.24.>

②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가 제1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4.>

[전문개정 2011.8.4.]

제25조(과태료) ① 제16조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재교부받고 부착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등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8.4.]

부칙 <제14839호, 2017.7.26.>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도로명주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6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8조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8조의3제2항·제3항, 제8조의4제2항, 제8조의5제1항·제3항, 제8조의6제3항, 제9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11조제1항, 제12조 전단, 제22조의2제2항제7호 및 제23조제1항·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4제2항, 제8조의6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8조의7제2항 및 제18조의3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8조의5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 산림청장"을 "경찰청장, 소방청장, 산림청장,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6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2.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시행 2014.8.20.]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506호, 2014.8.20., 일부개정]

세종특별자치시 (토지정보과) 044-300-2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도로명주소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도로명주소대장규칙」 및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에 한한다),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시기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여 고시하되 제작비용의 산정은 시 관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한 건물번호판의 조달단가(자체적으로 건물번호판을 설계한 경우에는 해당 설계비용으로 변경)를 기준으로 한다.

③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세종특별자치시 수입증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원인자부담)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세입·세출외현금 규정에 의하여 관리 집행한다.

제5조(법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의무) 시장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의

하여 부여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명칭(노선명)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도로명주소 관련 자료의 제출) ① 시의 도로·건축물·국토이용계획·지적 등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련 자료를 도로명주소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로명주소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에 따라 정리한 도로명주소 등을 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을 일제 조사한 결과,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이 발견된 때에는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신청·설치하도록 건축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훼손·망실된 도로명시설을 재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8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시장은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법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공단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로명주소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도로명주소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도로명주소시설 일제조사 계획
5. 도로명주소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도로명주소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9조(도로명시설의 점검) ① 시장은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 위

탁한 상대방(이하 “수탁자” 라 한다)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도로명시설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도로명시설이 훼손.망실되었거나 훼손.망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수탁자가 도로명시설을 성실히 유지 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1조(광고의 범위) ① 시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 안내도 부분에 표시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은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과 구분되게 표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1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광고사업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광고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광고주의 모집방법, 게재할 수 없는 광고물의 범위, 제작·설치된 도로명주소안내판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광고사업자는 광고주를 모집하여 도로명주소안내도와 도로명주소안내판의 제작을 위한 시안을 작성한 후 시장과 협의·확정하여야 한다.

제13조(광고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광고사업자의 광고사업에 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4조(도로명주소의 홍보.교육)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손수건, 휴대용 화장지, 부채, 자, 저금통, 달력, 접지형 지도, 컴퓨터용 마우스패드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할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민방위·예비군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실비변상) 시장은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하여 고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① 시장은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해 법 제2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시책을 추진

하여야 한다.

1.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여객 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에 도로명주소안내도 부착, 도로명주소안내판 설치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2.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등의 위치표시체계에 도로명주소방식 도입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 사업 지원
4. 그밖에 시장이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2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도로명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2014.8.20.일부개정)

-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2. 도로명주소사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3. 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2014.8.20. 일부개정)

-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 ③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새로이 시작한다.

제19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0조(위원회의 기능)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집행계획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도로명의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4.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5.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 등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2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로명주소부서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24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는 사항

제2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06호, 2014.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제506호. 2014.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문헌

- 이성호 외(2001),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새주소부여사업의 효율성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도시연구〉 제11권 0호. 21~32.
- 이민영 외(2001), “새주소 관리시스템에 관한 연구”, 〈한국지리정보학회지〉 제4권 1호. 47~56.
- 김육남 외(2007), “도로명에 의한 주소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7~37.
- 최승영 외(2007), “새주소 체계의 조기 정착을 위한 방향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지〉 9권 2호. 1~12.
- 김영학(2008), “도로명주소의 이력관리형식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0권 2호. 47~62.
- 이정석(2010), 〈경남지역 도로명주소 사업의 추진 실태와 정책과제〉, 경남발전연구원 정책포커스 이슈분석. 1~58.
- 김준현 외(2011), “새주소 제도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전략 활성화 방안”,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3권 1호. 31~42.
- 권아영(2011),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47호.
- 김선일 외(2015), “우리나라 도로명 주소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539~555.
- 옥진아 외(2016),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개선과제〉,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241호. 1~26.
- 홍임이 (2016), “도로명주소제도의 발전 방향 모색”,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 임재희 (2017.12.27.). 7자 이상 긴 도로명주소 짧게 손본다. 〈중앙일보〉. URL: <http://news.joins.com/article/22237456>
- 송한빈 (2017.7.6.). 시흥, 9월까지 도로명판 800여개 추가 설치. 〈신아일보〉. URL: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9561>
- 경상남도 (2016.11.22.). 350만 전 도민 위한 맞춤형 도로명주소 교육 추진. 〈경상남도 도정뉴스〉. URL: <http://news.gyeongnam.go.kr/?p=123127>
- 김동원 (2017.10.27.). 평창군, 전국최초 범죄예방디자인 건물번호판 설치. 〈포커스 데일리〉. URL: <http://www.ulsanfocus.com/news/articleView.html?idxno=896>

- 법제처, <도로명주소법>. URL: <http://www.law.go.kr/>
- 법제처,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URL: <http://www.law.go.kr/>
- 법제처,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URL: <http://www.law.go.kr/>
-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지역별 도로명 DB. URL: <http://www.juso.go.kr>
-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 활용가이드>. URL: <http://www.mois.go.kr>